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이형대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Verifying the Origin under
KOREA · US FTA through Case Research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이형대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지도교수 전의천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이형대

이형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의천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
제2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원산지제도	6
제1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6
1. 전세계 FTA 동향	6
2. 한국의 FTA 추진 및 활용현황	8
3.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11
제2절 협정별 FTA 원산지제도	16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16
2.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22
3. FTA 원산지조사제도	24
제3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 고찰	27
제1절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및 통관제도	27
1. FTA 원산지검증의 의의	27
2.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및 동향	27
3. 미국의 수입 통관제도	31
제2절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	36
1. 원산지검증 절차 개요	36
2. 서면검증 절차	38
2. 현장검증 절차	44

제4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8
제1절 수출입기업의 검증대응 사례	48
1. 검증대응 성공사례	48
2. 검증대응 실패사례	55
제2절 주요 산업별 검증사례	59
1. 자동차 부품 산업	59
2. 전기·기계산업	62
3. 석유화학산업	75
4. 섬유 및 의류산업	76
5. 농수산물식품산업	94
제3절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제시	98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100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104
제5장 결론	10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0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0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8
<표 2-2> 우리나라의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9
<표 2-3> 품목별 FTA 특혜 수출입 현황	10
<표 2-4> 한·미 FTA 협정상 생산자 정의(제6.22조 정의)	11
<표 2-5> 한·미 FTA 양허 스케줄	12
<표 2-6> 한·미 FTA협정상 원산지상품의 정의	13
<표 2-7> 한·미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 규정	14
<표 2-8> 협정별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기준 근거규정	17
<표 2-9> 원산지규정의 구성	18
<표 2-10>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비교	21
<표 2-11>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및 회신기간	23
<표 2-12> 협정별 원산지조사 내용(특혜적용요건 기준)	26
<표 3-1>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증관련 주요 제출자료 검토사항 및 현장확인 점검사항	47

【그림 목차】

<그림 2-1> 원산지상품 결정체제도 20
<그림 2-2> 원산지상품 결정체제도 21
<그림 3-1> 한·미 FTA 원산지 서면검증 기본절차도 39
<그림 3-2> 한·미 FTA 원산지 서면검증 상세절차도 43

【사례 목차】

<사례 1> 차량 휠부분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63
<사례 2> 차량 엔진밸브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64
<사례 3> 전동축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67
<사례 4> 프레스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68
<사례 5> 음향신호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69
<사례 6> 전동모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0
<사례 7> 부분방전관찰시스템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1
<사례 8> 균형시험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2
<사례 9> 이송용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4
<사례 10-1>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6
<사례 10-2>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보안통지서)	76
<사례 10-3>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확정통지서)	77
<사례 11> 폴리머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78
<사례 11> 유아용 카펫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0
<사례 12> 의류 부속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2
<사례 13> 편물제 양말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3
<사례 14> 스카프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5
<사례 15> 나일론 스판덱스 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6
<사례 16> 원형니트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88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Verifying the Origin under KOREA · US FTA through Case Research

Lee, Hyeong-dae

Advisor : Prof. Jun, Eui-cheon,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the Korea-Chile FTA at the beginning, Korea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FTAs) with a total of 52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ustralia, Canada, Columbia, China, and New Zealand at their last, including those 9 FTAs with 47 nations which already went into effect as of November, 2014. With this, the nation has extended its FTA networks from North America, Europe, and Far East to other continents including Oceania, enlarging its economic territory up to 73.45% of the global economy by the criterion of GDP.

Since FTAs focus on merchandise trade, enterprises engaged in international import and export usually choose to take FTA preferential duty track in their customs clearance procedure to minimize their expense and maximize their profit. If they are to get the FTA preferential duty privilege and allow their trade counterparts to benefit the same treatment, they need to be aware of the burdens ranging from the classification of the merchandise to lots of paperwork regarding origin criterion, origin verification forms that is different from FTA to FTA and verification procedures that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lots of bothering paperwork and documentation.

In the early times, there were enterprises which benefited from preferential duties

through FTA origin merchandise trade, while being subject to afterward origin verification by the authority in their trade partner's country, unprepared. It is especially difficult for enterprises that are directly exposed to superpower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ere origin verification has long been developed to weather the rigorous probe and meet the requirements. Likewise, to deal with origin verification efficiently, one should be fully prepared from the initial stage of raw materials to later stages of storing and preserving documents after clearance.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y need to objectively go through all the method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ies mutually agreed by the signing government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here applicable, since uncomfortable situations may occur that cost huge amount of time and expense afterwards if the importing/exporting enterprise tries on its own discretion to prepare itself for the verification.

Therefore, the study endeavors to help trade industry in the nation, by reviewing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focused on the KOR-US FTA and by revealing hardships that may surface in their busines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a few cases of origin verification that has been sought to find if they met FTA origin requirements by customs authorities both domestic and overseas, and then recommending solutions as well as approaches from the dimensions of the very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d its limitations in extracting the problems and its suggestions since there were few studies formerly done on the field of origin verification for the KOR-US FTA. Thus, the study had to look into a small number of practical cases that had been undergone by customs authorities instead of an in-depth positive research. It seems that some standard data handling work is necessary supported by sufficient data on practical verification cases, while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tem and business into consideration in future stud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04.4.1)를 시작으로 한·터키 FTA('13.5.1)까지 근 10년만에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정을 체결함으로써 9개협정 47개국과 FTA협정을 발효시켰으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에 이어 14번째로 뉴질랜드와의 FTA를 타결시킴으로써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FTA 네트워크를 북미·유럽·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해 GDP기준 경제영토¹⁾를 73.45%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경제영토는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가 됨으로써 전세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지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은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FTA특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 시장으로의 접근성 증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업체들은 주요 경제국가로부터 FTA 관세특혜를 받아 수입하게 됨으로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면에서 FTA 혜택을 향유하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FTA혜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물품은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품목, 운송, 원산지증명, 원산지상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구비서류를 증명하고 관리해야만 FTA 사후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산지검증이란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서류나 현지조사 등에 기초하여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비롯한 각종 제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²⁾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벌금, 거래선 변경, 세금 추징 등 불이

1)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국내총생산(GDP)가 차지하는 비중.

2)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2013, p. 235.

익 조치에 회사 존폐를 가늠하는 중요한 곤경에 처할수도 있게 됨에 따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14.3.15.일로 한미 FTA발효 2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은 상호 투자확대와 기술교류 등 경제적 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면에 원산지상품에 대한 사후검증도 점차 강화될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EU와 같이 FTA의 역사가 길고 그에 따른 원산지 검증기법도 오랜 기간 축적된 바,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섬유 등과 같은 민감산업 및 품목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충족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C/O기준으로 2013년 745건에서 2014년 10월까지 1,594건으로 두 배가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절차를 이해하고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의 확인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원산지 검증사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또는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체결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보고자 함에 있음은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자 한다.

3) 관세청 내부통계자료.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원산지 검증분야에 있어서 기존 연구 실적이 미미하고, 검증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한 실증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한·미 FTA 원산지검증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원산지검증 기법 및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이 주는 시사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 고찰을 위해 인터넷 자료와 출판물, 기존 연구자료, 주요 참고문헌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실제 사례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한국의 FTA추진 및 활용현황과 원산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를 위해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수입통관제도 그리고 원산지검증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FTA 실제 검증사례를 열거하여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선행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FTA 원산지 사후검증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유인 즉, 한·미 FTA체결(2012.3) 이후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 원산지증명서 기준으로 약 1,500여건의 검증사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검증대상업체와 검증기관에서의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내용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검증사례를 확보하여 나름대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자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임성균(2013a, 2013b, 2013c)⁴⁾은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의 법적 근거와 절차, 미국의 통관제도,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실무 및 검증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임성균(2014)⁵⁾은 한·미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절차와 미국세관의 주요업종별 검증사례를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세관으로 근무하는 김석오(2013)⁶⁾는 미국의 원산지검증 동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한바 있다.

이런 연구를 기초로하여 한·미 FTA검증사례에 대한 선행연구⁷⁾가 있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동 선행연구는 한·미 FTA 검증에 따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일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소송에서 기업과 정부간의 양 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검증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유형별로 짜임새있게 제시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측에서 CBP Form28(정보제공요청서)에 따라 미국측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검증사유

4) 임성균,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a, pp. 6-23; 임성균, “한미 FTA 원산지 검증실무,”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b, pp. 24-47; 임성균, “원산지 검증사례,”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c, pp. 48-63.
 5) 임성균,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계간 관세사」, 201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pp. 21-77.
 6) 김석오, “미국의 원산지검증 동향 및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13년 가을호, 한국관세사회, pp. 4-9.
 7) 최양식,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통상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4.

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검증기관에서 수행한 검증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FTA원산지 검증관련 연구에 비해서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연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선행 연구자료외에도 주요 정부기관에서의 FTA활용 촉진대회, 수출입업체대상 설명회, 내부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을 총 망라하여 보다 더 많은 검증실무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검증대응 성공 및 실패사례, 주요 산업별 검증사례 등 유형별로 재정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출입기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향후 이 연구가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수출입기업은 물론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기초자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원산지제도

제1절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전세계 FTA 동향

FTA(자유무역협정)란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협정국간 상호 교역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특혜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 체결당사국간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비체결국에게는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주요 동기는 신규거래선 발굴 등 해외시장 확대 및 유지와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신규상품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산업발달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하나로 2014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93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3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343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⁹⁾,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8) 관세청 FTA포털(www.fta.go.kr).

9) 관세청 FTA포털_FTA정책요약자료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콜롬비아 FTA(2013.2), 한-호주 FTA(2014.4), 한-캐나다 FTA(2014.9)가 정식 서명 완료되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과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하였으며, 이외에도 RCEP,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중국, 일본 등과의 FTA가 실질적으로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간의 FTA를 통한 교역비중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¹⁰⁾

10) 청와대소식지_정책소식(2012.7.10.).

2. 한국의 FTA 추진 및 활용현황

가.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4월 한·칠레 FTA발효 이후 2014년 11월 현재까지 9개 협정, 47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와는 발효시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36%에 이르고 2014.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최대 교역상대국인 한·중 FTA가 체결되고 여건 조성중인 중미, GCC 등과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은 거의 9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표 2-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구분	발효현황	타결현황	협상진행	여건조성
협정 상대국	칠레,싱가포르, EFTA,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한중일,베트남, RCEP, GCC, 일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중미, MERCOSUR, 말련,SACU, 몽골,러시아
교역비중 (%)	36	26.4	7.9	15
누적비중 (%)	36	62.4	70.3	85.3

자료 : 무역협회 홈페이지 및 관세청 내부자료 연구자 재작성.

나. FTA 활용율

1) 협정별 FTA 활용율

협정별로 가장 활용률이 높은 협정은 다음 <표 2-2>와 같이 한·칠레 FTA로 수입은 98%, 수출은 80%대에 달한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출입 공히 60%후반에서 70%후반의 활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미하게나마 FTA를 통한 수출입활용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우리나라의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단위 : %)

FTA발효국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9월
칠레('04.4)	수출	-	75.4	78.9	80.7
	수입	95.8	97.9	98.5	97.6
EFTA('06.9)	수출	-	84.9	80.3	81.2
	수입	55.7	61.9	41.8	41.0
아세안('07.6)	수출	33.1	34.8	36.4	38.3
	수입	73.8	72.5	74.1	72.6
인도('10.1)	수출	35.8	36.5	43.2	56.6
	수입	53.6	53.9	61.4	68.7
EU('11.7)	수출	65.7	84.1	85.6	85.5
	수입	47.1	67.6	68.6	67.4
페루('11.8)	수출	61.3	77.8	91.9	89.7
	수입	52.6	92.0	97.9	89.3
미국('12.3)	수출		69.4	77.0	76.3
	수입		63.7	68.3	65.7
터키('13.5)	수출			69.4	71.7
	수입			69.4	64.2

자료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무역리포트」, vol. 09, 2014, p. 203.

주 : 1. 칠레, EFTA 수출활용률은 이행위를 통해 교환한 상대국 자료를 통해 산출하여 자료를 교환하지 않은 연도의 활용률은 산출이 어려움.

2. 아세안 수출활용률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수치임.

3. 수입활용률 산출시 징수형태 부호가 과세보류인 실적은 제외하며, 무역통계 확정 이후 협정 관세 적용실적은 고려하지 않음.

2) 품목군별 FTA 활용율

전체 협정의 품목군별 FTA특혜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에서와 같이 일반수출입에 비해 그 규모가 10% 이내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3> 품목별 FTA 특혜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일반	FTA 특혜	총계	구분		일반	FTA 특혜	총계
화학공업	수출	95	5	100	섬유류	수출	91	9	100
	수입	92	8	100		수입	90	10	100
플라스틱, 고무, 가죽	수출	90	10	100	농림수산물	수출	95	5	100
	수입	93	7	100		수입	90	10	100
철강금속	수출	94	6	100	기계류	수출	92	8	100
	수입	97	3	100		수입	92	8	100
전기·전자	수출	96	4	100	광산물	수출	97	3	100
	수입	98	2	100		수입	98	2	100

자료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무역리포트」, vol. 09, 2014, pp. 182-201.

주 : 1. 2014년 상반기 실적 기준.

<표 2-3>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 자료에 의하면 협정별로 개별국가의 비중이 높은 품목군으로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수출입 모두 EU협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플라스틱류의 경우 수출은 미국, 수입은 EU가 차지하며, 철강금속의 경우 수출은 미국, 수입은 칠레 및 아세안협정이 가장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은 미국, 수입은 EU가 높게 나타내며 섬유류의 경우에는 수출입 모두 아세안협정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은 아세안협정, 수입은 미국이 비중이 높고 기계류의 경우에는 수출은 미국이, 수입은 EU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¹¹⁾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이 FTA관세특혜(인하 또는 철폐된 관세율 적용)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상품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대수입국의 수입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수입자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에 모두 합치된 원산지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무역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되는 이익을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 거래 당사자 요건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중 첫 번째는 거래당사자 요건으로 FTA에서 거래당사자는 보편적으로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산지와 관련되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가 되며 원산지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검증에 대한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다음 <표 2-4>는 한·미 FTA 협정상 규정된 생산자의 정의 조항이다.

따라서, 제3국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협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표 2-4> 한·미 FTA 협정상 생산자 정의(제6.22조 정의)

생산자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 Producer means a person who engages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

11) 이영달, 「2014년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pp. 22-61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나. 품목 요건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중 두번째는 품목 요건으로 FTA특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양허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품목도 협정별·국가별·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다.

<표 2-5> 한·미 FTA 양허 스케줄

양측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기타는 15년내 단계적 철폐

다. 원산지상품 요건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중 세번째는 원산지상품요건으로 체약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이 특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원산지상품은 원산지규정의 일반규정과 품목별규정 모두를 충족하는 상품으로 협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2-6> 한·미 FTA협정상 원산지상품의 정의

미국	<p><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p> <p>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p> <p>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 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p>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p> <p>Article 6.1: Originating Good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it i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or Annex 6-A, or (ii)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Annex 4-A or Annex 6-A, and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or (c)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	--

라. 운송 요건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중 네 번째는 운송요건으로 이는 다시 말하면 직접운송원칙¹²⁾을 의미한다. 직접운송 요건은 그러나,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된다. 운송요건에서 중요한 것이 경유국에서 어떠한 가공도 없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는 일이다. 경유국에서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물품이 그 나라를 떠난 후에는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유국 출항 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7> 한·미 FTA협정상 직접운송원칙 규정

미국	<p><제6.13조 통과·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p> <p>Article 6.13: Transit and Transship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good: (a) undergoes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 (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p>
----	---

한편 칠레 및 미국과의 FTA는 직접운송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출 당시 수출채약국에서 수입채약국을 최종목적지로 하여 발송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제3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직접운송요건을 두는 경우와 같다.

12)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말함.

마. 원산지증명 요건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중 마지막은 원산지증명요건이다. 원산지증빙서류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와 이 증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C/O)는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특별히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한·미 FTA협정문 제6.15조 제2항에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필수항목¹³⁾만 기재되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에서 필수항목을 삽입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FTA협정국간에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특혜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혜택을 정당하게 누릴수 있게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위의 조건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13)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함),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제2절 협정별 FTA 원산지제도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가. 협정별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근거규정

FTA 원산지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하며, 즉 물품의 생산국적을 의미한다¹⁴⁾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정의하는 경우, 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일정기간 다시 재배되거나,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분업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결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원산지 결정기준(협정문에서는 원산지규정)이다. 즉,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원산지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상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를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무역정책상 제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독자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기준의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편 FTA 특례법은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여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협정은 통상 협정문 본문이나 별도로 부속서에 별도항목으로 정하고 있음. 한·미 FTA의 경우 협정 제4장(섬유의류), 제6장(기타품목)에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22조 정의조항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많은 부분을 기술해두고 있다.

14)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나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귀속 후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독립관세영역이나 자치권 보유 등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가 될 수 있다.

〈표 2-8〉 협정별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기준 근거규정

구분	원산지규정			품목별 기준
칠레	협정본문	제4.2조	특례규칙 별표8	부속서4
싱가폴	협정본문	제4.2조	특례규칙 별표4	부속서4A
인도	협정본문	제3.2조	특례규칙 별표7	부속서3가
EU	원산지의정서	제2조	특례규칙 별표9	부속서2
ASEAN	협정부속서3	제2조	특례규칙 별표6	부속서3
EFTA	협정본문 부속서1	제2조	특례규칙 별표5	부속서1 부록2
페루	협정본문	제3.1조	특례규칙 별표10	부속서3가
미국	협정본문	제6.2조	특례규칙 별표11	부속서4가, 부속서6가
터키	원산지의정서	제2조	특례규칙 별표12	부속서2
콜롬비아	협정본문	제3.1조	특례규칙 미반영	부속서3가

나.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

FTA무역거래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상품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산지상품을 입증하려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FTA원산지규정(원산지결정기준의 협정상 표현)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등대우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관세인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¹⁵⁾ 역내국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FTA협정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때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품)과

15) FTA는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관세 인하 혜택 보다 크면 무역업체는 FTA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미국의 Bhagwati 교수는 복잡하게 얽힌 스파게티에 비유하여 “spaghetti bowl” 효과라 표현한 바 있다.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때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불완전생산품)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FTA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보충적 특례규정으로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세부적으로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표 2-9〉 원산지규정의 구성

구 분	종 류	
일반 기준 (GR)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대가공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품·공구 - 포장·용기 - 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전시용품
품목별 기준 (PSR)	공통기준	- 일반 주 - 부·류·호의 주
	개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조합기준(and)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선택기준(or)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자료 : 관세청, 「FTA 원산지 검증 매뉴얼」, 2010.12 참고하여 연구자 재정리.

1) 일반기준(General Rules)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통상 ‘별표’로 규정된다. 일반기준은 다시 원산지규정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기본원칙은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품기준, 생산 과정에 비원

산지재료가 사용되는 불완전생산품일 경우 동 물품의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하는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과 함께 역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가공이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¹⁶⁾ 협정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가 가공 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원산지상품임을 인정하는 원산지재료 생산품 기준,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 등이 있다.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에 대한 특례가 있다.

2)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기준은 다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뉜다. 공통기준은 특정품목군에 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준표에서 ‘부(Section)’, ‘류(Chapter)’ 등의 ‘주(Note)’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예 : 한·아세안 FT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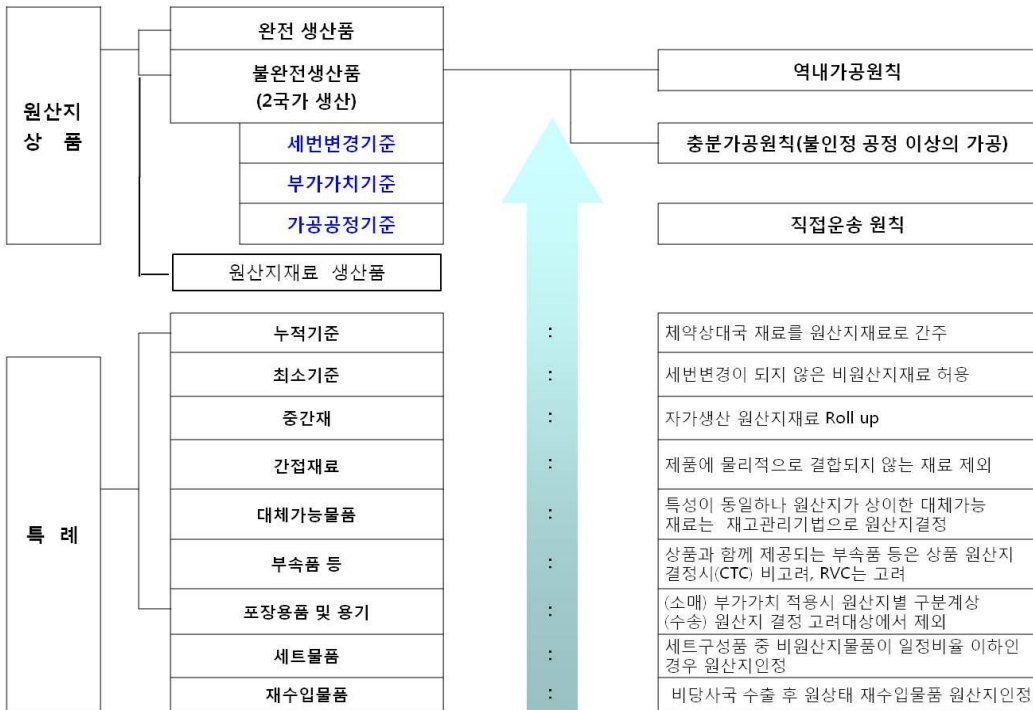
셋째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기준 등 다른 개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예 : 한·칠레 FTA) 개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별(HS Code)로 정해진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에 기반한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주를 이룬다. 이들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합기준, 규정된 복수의 기준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있다.

16) 통상, ‘완전생산기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실질변형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 원산지의 결정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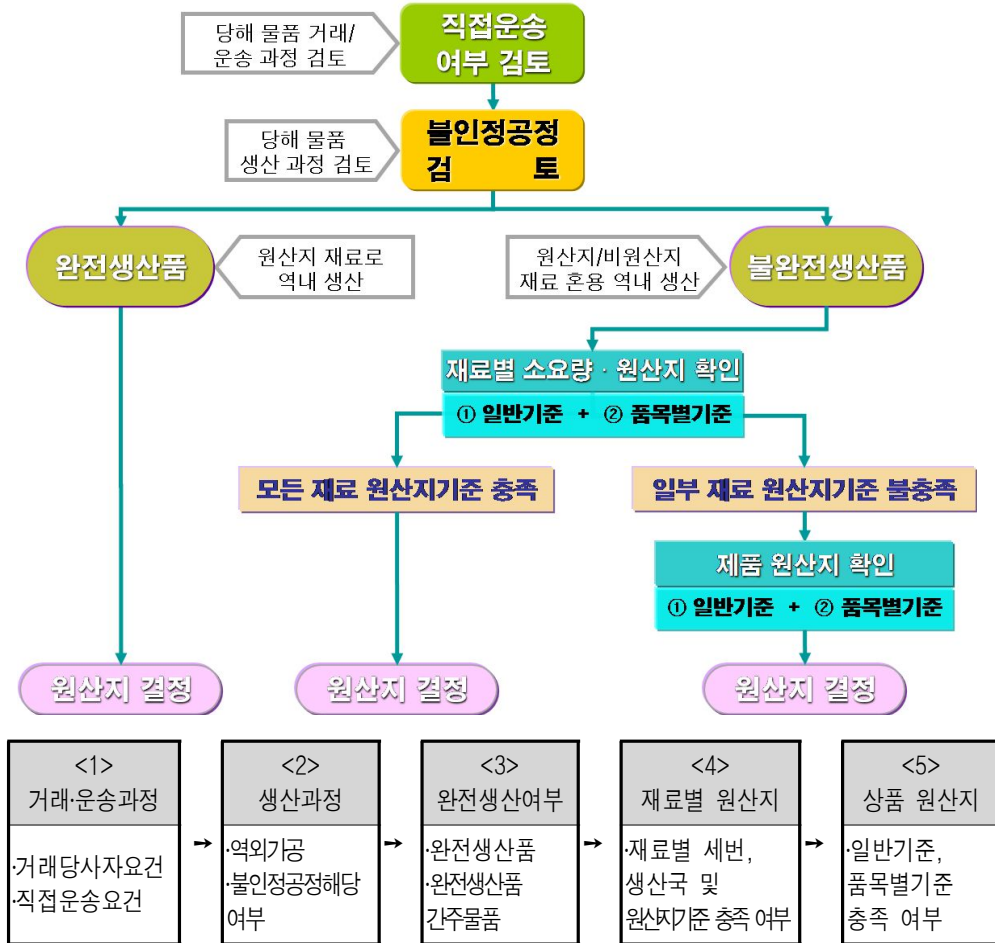
원산지상품에는 완전생산품(1국 생산)과 불완전생산품(역내 완전생산품, 완전생산간주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원산지상품 결정체계도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4, p. 16.

<그림 2-2> 원산지상품 결정체계도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교육교재」, 2013, p. 410.

2.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가. 원산지증명제도의 개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협정상대국간의 양허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품목번호를 결정한 다음에 해당되는 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당해 협정별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국의 수입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는 상대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고,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FTA관세특혜를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서 원산지증명서란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정의하며, 개정 교토 협약상의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양식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산지증명서(C/O)란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이 상대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협정관세)를 적용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 및 법령에 규정된 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뉘고 있다.

〈표 2-10〉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 비교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방법)	발급신청권자	서식	유효기간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2년
싱가폴	[기관발급] 싱가폴-세관 한국-세관,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수출자 -수출자권한위임 받은자	양국간 각자증명서식	1년
EFTA	[자율발급] 수출자 [기관발급] 스위스치즈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국가기관(상이) 한국-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생 산자로부터 권한 을 서면으로 위 임받은 자	통일증명서식 (AK FORM)	1년
인도	[기관발급] 인도-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EU	[자율발급] 수출자 * 6,000유로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작성 가능함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페루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인증수출자,2,000불이 하물품 * 5년후엔 모두 자율발급	-수출자 -수출자의 책임 하에 권한대리인	부속서 규정 통일된 양식	1년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비정형서식 (권고서식 사용권장)	4년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기재	1년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정리.

기관발급은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FTA협정에

는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FTA가 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FTA협정으로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페루FTA가 있다. 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유효기간, 서식, 작성주체 등이 각각 상이함으로 인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며 부대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자율증명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증명방식보다 기관증명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원산지의 허위증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책임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기관발급방식은 발급주체가 상대국의 국가기관 등이므로 공신력은 높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며 자율발급 방식은 발급주체가 수출자, 생산자 등이므로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한 점은 유리하나 허위증명 또는 작성방법의 미숙한 점으로 인한 잘못 작성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질수도 있음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FTA특혜관세 혜택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벌과금과 추징 등 막중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는 원산지증명의 작성 및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FTA 원산지조사제도

가. 원산지조사제도의 개념

원산지조사¹⁷⁾는 원산지증명서 허위 작성 여부 및, 실제로 원산지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진정성여부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증빙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것으로

17) 원산지검증과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FTA협정문에서는 원산지검증(Verification), FTA관세특례법상에서는 원산지조사로 사용(FTA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함”).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방지와 원산지 허위로 인한 관세탈루방지 등을 위해 관세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방문하여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처음부터 원산지검증에 응하지 않거나,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서류가 미비하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검증에 실패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관세에 대한 추징을 당함은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협정별 원산지조사 절차 및 내용

원산지조사의 기본원칙은 수리 후 조사 원칙과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이 있다.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조사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뤄지며, 그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예정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3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수입물품에 대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협정별로 정한 기간이내에 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표 2-11〉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및 회신기간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페루	미국
검증방식		직접검증	간접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참관가능)	직접,간접 검증 중 선택	직접검증, 단 섬유관련물품 은 간접검증
회신 기간	수입	30일	(아세안)2개월 (인도) 3개월	10개월	150일	12개월
	수출					6개월

자료 : 관세청 내부 교육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재작성 정리.

원산지조사에서 핵심적인 조사분야는 협정별로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특혜관세적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 <2-12>에서와 같이 계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 계약국간 양허대상품목인지 여부, 원산지가 계약국인지 여부, 수출입국간에 직접운송인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및 원산지관련 자료의 보관 관리 여부가 포함된다.

〈표 2-12〉 협정별 원산지조사 내용(특혜적용요건 기준)

요 건	내 용
거래당사자	계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
품목	계약국간 양허 ¹⁾ 대상품목인지 여부(HS 6단위 기준)
원산지	원산지가 계약국인지 여부 (협정의 원산지규정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
직접운송	수출입국간에 직접운송인지 여부 (예외 조항 충족여부, 증빙서류로 입증)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형식적요건과 실질적 내용)
자료보관	원산지관련 자료를 일정기간(5년)보관 관리 여부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사후검증 대응 완전정복」, 2014.6.18, p.14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주1) : 관세의 양허란, FTA 협상국간에 관세를 일정세율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FTA 협정체 결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양허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당사국간에 합의된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인하하게 됨.

제3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제도 고찰

제1절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및 통관제도

1. FTA 원산지검증의 의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은 한·미 FTA협정 및 국내법령에 따라 FTA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별 협약과 동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수행하며,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검증은 한·미 FTA협정과 동 협정의 내용을 반영한 미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세관당국이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한·미 FTA 원산지 사후 검증에 불이익 조치등을 받지 않으려면 한·미 FTA 협정문과 한국과 미국의 통관 관련 법령과 수출입통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 한·미 FTA협정문과 국내법령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협정문은 제6.18조의 검증관련 규정이 있으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협정문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에 규정된 섬유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2.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및 동향

가.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제도

현재 미국은 14개의 FTA 협상을 통해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¹⁸⁾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FTA 협정을 추진한 것은 캐나다와 체결한 NAFTA로 1994년이

18) FTA무역융합지원센터 포털 홈페이지(<http://okfta.kita.net>).

었다. NAFTA는 유럽연합과 대비되는 미국형 경제통합으로서 FTA의 이행에 관한 여러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이들 FTA의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서면질의, 현장방문조사를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이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물품에 대하여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하여는 간접검증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섬유분야에 대해서 간접검증을 채택한 이유는 섬유산업이 열세로 자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미국측에서는 미국세관이 수행하는 직접검증보다 우리나라세관이 실시하는 간접검증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원산지검증 방법은 미국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거나 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시 직접 같이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에 의하면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서면에 의한 정보 요청, 서면 질의 또는 사업장 방문 조사(현장 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조사의 목적은 원산지 증빙기록의 유지 의무에 따라 해당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인력 및 시간의 제약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를 우선 검증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검증이 진행되며, 현장방문보다는 서면 방식에 의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제적인 운영 형태라 할 수 있다. 현장검증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청은 비 섬유류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검증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현장검증은 미국내 자국산업보호 수위에 따라 수행될수 있다. 왜냐하면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미국세관의 관세율이 매우 낮고,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관세청 관세징수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섬유류의 경우에는 섬유류 해외현장검증팀을 통해 매년 원산지 위험국 및 우범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해서도 통관지 세관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검증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혜가 배제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미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원산지검증대상은 미국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 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 세관은 조사대상자를 선별한 한편 검증 대상을 미국 관세당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품목군을 정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개별 특정수입신고 건과 부정수입 또는 범규준수도 위험도가 높은 특정수입업체를 정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특정수입업체 전체수입 신고 건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후 원산지검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자체명세서, 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관 수입담당자가 직접 수출업자를 방문하기도 한다. 세관 수입담당자의 현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증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미국세관에서는 대부분의 검증을 수입자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미국세관은 FTA특혜 관세를 적용한 신고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도 수입자의 몫으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미국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료제출기한, 자료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자가 적용했던 FTA특혜세율은 부인되고 기본세율과의 차액만큼 추정하게 된다. 결국 협정에서는 수입국 세관은 수입자 뿐만 아니라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까지도 직접 검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미국 세관은 FTA 체결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조사없이 수입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검증을 종결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미국의 세관으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받지 않았는데, 미국의 수입업체로부터 각종자료 요청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원산지검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세관의 검증절차에는 전체적으로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서면조사 과

정에서 미국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답변해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방문조사는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세관 등에 현지방문조사의 취지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고,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을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관계자 인터뷰, 회계구매재고관리시스템 심사,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보관서류의 일치 여부, 공급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관상황, 재료 공급자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 결정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검증을 실시한다.¹⁹⁾

검증이 종료되면 60일 안에 검증대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하는데,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통보를 하며, 만일 검증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재검토 작업후 최종 서면통보를 한다.

나.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동향

미 세관은 매년 9개국 150~170개의 해외수출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방문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는 마우리우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8개국가의 165개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에는 엘살바도르, 요르단, 도미니카 등 9개국가 149개의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과테말라, 도미니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4개국은 2년 연속 미 세관의 현지검증 대상국에 포함되었다.²⁰⁾

미 세관의 해외 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의 경우 165개 검증대상 업체 중 16개 공

19) 미국은 NAFTA의 경우 통일되고 일관된 원산지 검증절차의 적용을 위해 NAFTA 검증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 현지방문 조사에 중점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및 절차, 권고하는 검증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20) 김석호, “미국의 원산지검증 동향 및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13년 가을호, 한국관세사회, 2013, pp. 5-6.

장은 폐업, 45개 공장은 증빙서류 불충분 또는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의 경우 149개 검증대상 업체 중 38개 공장은 폐업, 53개 공장은 증빙서류 불충분 또는 원산지규정위반으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해외 현지업체가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특혜관세 거부는 눈여겨 봐야 할부분이다.

미 세관의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징수액은, 2011년 기준, 125억불로 총관세액 289억불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그만큼 세수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 세관이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조치를 두고 해외검증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엿보인다.

3. 미국의 수입 통관제도²¹⁾

‘FTA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관세관련 법령과 통관제도의 틀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통관제도는 1993년에 제정된 “세관 현대화 법(Customs Modernization Act)”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관 현대화 법은 “법규준수도 제공”과 “책임공유”라는 2개의 통관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법규준수도 제공”이란 관세당국이 무역업체에게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의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무역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책임 공유”란 관세당국에게는 무역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의무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역업체가 통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하여 “세관 현대화 법”은 수입업체에게 미국 관세청에 품목분류, 관세평가, 화물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주의”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 통관과정

21) 임성균,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a, pp. 6-2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요약재정리.

에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 미국 관세법상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²²⁾

미국 수입자가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 통관제도 상의 “합리적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수입자의 합리적 주의 의무는 수출자에게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무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를 비롯한 FTA 무역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거래관계의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수입자에 부과된 “합리적 주의의무”와 “법규준수의무”를 토대로 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이와 연계된 형태로 수입물품에 대한 FTA 검증절차가 진행된다. 즉, 검증은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수입 통관절차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관세청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FTA 검증의 형태로 FTA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검증을 미국의 수입 통관절차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통관단계는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 → 납세신고(Entry Summary) 단계로 되어 있고, 사후심사단계는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 → 정산(Liquidation)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까지 선사 또는 항공사를 통해 적하목록 정보와 ISF 보를전송해야 한다. 식품 등 FDA 소관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에 미국 FDA에 식품제조시설과 제품도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각 물품의 종류에 따라 Import Permit 등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²³⁾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Entry 제출이라고 한다. 만약 화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관장명령하에 세관창고로 화물을 강제로 옮긴 후 매각 또는 폐기절차에 들어간다. 화물반입신고 후 세관은 신고화물에 대하여 필요시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 하여 검사한 후 신고취하 또는 반입을 허용하고, 검사의 필요가 없을 경우 즉

22) 임성균,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2013a, 한국관세사회, p. 10.

23) 김석호, “미국의 수입통관장벽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14년 여름호, 한국관세사회, 2014, p. 25.

시 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세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세관의 의견을 들은 후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출하는 화물은 사후에 납세신고를 하게 된다.

미국세관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시 화물반입신고 서류에 원산지국 표시가 없거나 허위로 된 것,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 신고하는 원산지국은 FTA 특혜관세 신청으로서 효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 원산지국을 KR(Korea)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신고 단계에서 신고하면 FTA 특혜관세 신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해당물품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할 물품이라면 화물반입신고 단계에서도 원산지국을 KR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는 납세신고단계에서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수입화물에 대해 화물반출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신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포함한 인지에 기초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수입자가 신청하는데, 단지 수출자이든 또는 등재된 수입자로서 수행하든지 일련의 서류와 다수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수입화물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면 HTSUS No(우리나라의 HS 번호)앞에 반드시 KR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FTA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화물반입신고단계에서 Country of Origin 란에 KR을 붙이지 않더라도 FTA 특혜관세 신청과는 무관하다. 다만, 붙이지 않았을 경우 세관의 대비 검증의 사유가 될 뿐이다.

미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혜관세 신청을 미국은 Entry Summary 서식에 KR로 표기하는 것으로 같음하지만, 우리는 특혜관세신청서식에 필수 기재사항²⁴⁾을 기재한 후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소급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자료

24)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품명 및 HS품목번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알고 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가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특혜관세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할 당시의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에 기재된 날짜는 신고일 이전이어야 한다. 미국 수입자는 납세신고시 관세평가, 품목분류, 세율, 원산지, 지식재산권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업체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납세신고 단계부터 정확한 신고가 되어야 FTA 검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입화물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게 되면 화물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MPF))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제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²⁵⁾ 통관단계에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 등 필요한 최소 사항만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은 통관 후에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정산(Liquidation)은 보통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정산할 수 있다.

정산결과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등록하여 수입화주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세관의 정산(Liquidation) 이전에 FTA 협정관세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수입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미국의 수입업체가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을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미국에서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쿼타 해당여부, 한국과 미국 간의 환적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25) FTA특혜관세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화물취급수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업무를 대행하는 현지 관세사가 면제가능한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1년 이내에 해당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드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제1단계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수출물품의 미국에서의 품목분류이다. 왜냐하면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진 FTA 관세율표에 의해서 수출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거나, 기준관세²⁶⁾ 보다 낮게 납부할 수 있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품목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관세율의 적용이 달라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결정기준도 달라져서 잘못된 결정기준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당국에서 원산지증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품목분류는 <http://usitc.gov/tata/hts/index.ht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품목분류가 미국세관에서 품목분류한 내용과 상호 다르거나 달리 적용되어 오류로 결정되면,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져서 미국세관으로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검증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당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이거나 우리나라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확인(품목분류 사전회시 받음)을 받았는데 미국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달리 품목분류를 한 경우 또는 미국세관에서 품목분류를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품목분류와 수입국인 미국의 품목분류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혜관세혜택을 받게되는 상대국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화주를 통하거나 미국세관에 수출자가 직접 질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해당 상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수출하기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면 미국세관을 통해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한 후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관세가 무세인 물품²⁷⁾이라면 FTA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부과와 별도로 물품취

26) 한-미 FTA에서 기준관세율은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로 정했는데, 최혜국 관세율은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27) 대표적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 핸드폰, 반도체,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정보기술협정(ITA) 적용대상 물품을 들 수 있다.

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MPF))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라면 관세가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혜택은 볼 수 있게 된다. 미국세관에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는 관세 과세가격의 0.3463%이며, 각 수입신고 건당 최소 미화 25\$에서 최대 미화 485\$까지이다. 그리고 물품취급수수료 면제혜택을 얻기 위해서 수입자는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가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이 FTA 원산지 기준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등이 있는데, 수출물품의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제2절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

1. 원산지검증 절차 개요

한·미 FTAdml 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 유형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수출국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형 모델에서처럼 인증수출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서를 보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도 있다.²⁸⁾

미국관세청에 의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은 자국내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발송하여 원산지증명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서식은 미국세관이 수입자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서류로서 원산지검증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과 같이 모든 조사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이다.

28) 김희열, 광근재,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2013, p. 504.

미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라면 이 서식을 미국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서류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면 즉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통보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후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서류를 통보받은 미국내 수입자는 스스로의 자료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 경우 미국세관에 해당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대응자료로 부족하거나 미국세관으로부터 수출자의 자료를 직접 요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수출국내 수출자에게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주도록 요청할수 있다. 또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에서 FTA원산지 검증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전화 또는 이행통지서(CBP Form 29)를 이용하여 확정통보를 한다. 그러나 FTA원산지 검증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행통지서(CBP Form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 통보를 하는데, 이 경우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와 제출한 서류 등을 세관에서 검증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이거나, 제출을 한 후 검증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확정통보를 한다. 그런데 세관에서 검증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행통지서 받은 시점이 세관의 사후세액 심사단계 중 사후심사 단계로 정산 단계 이전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수정된 이행통지서를 통해 받게 된다. 이 경우 정산에 착수한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등 행정구제절차를 통해서도 수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검증방법으로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에 대하여 실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서면검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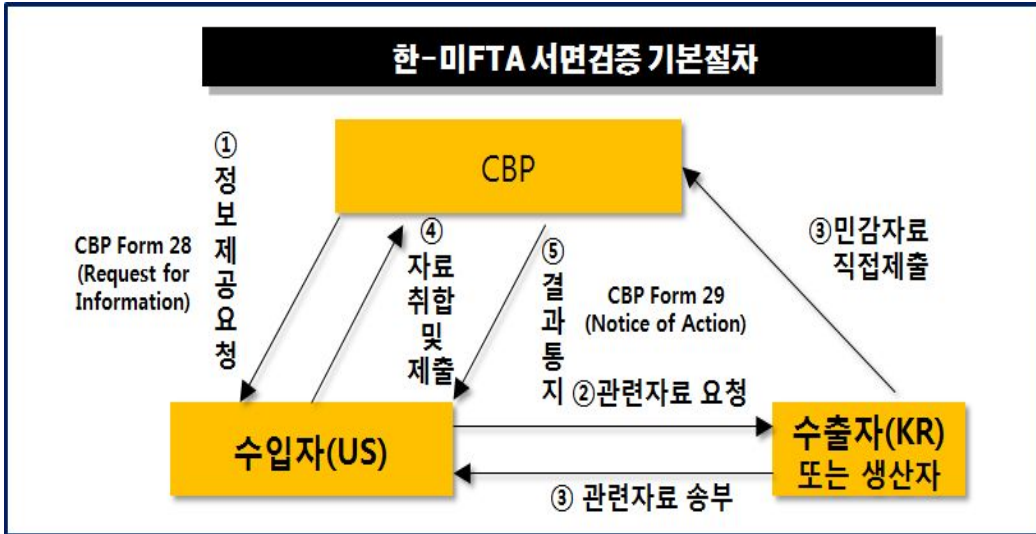
서면검증은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후 행하는 건별 사후세액 심사와 같은 성격으로서,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비특혜 및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정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규의 준범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와 이행통지서(CBP Form 29)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심사와 결정을 한다. 따라서 FTA 원산지 서면검증은 사후세액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요구한다.

미국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현대화법에서는 세관은 세관고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세관고객은 거래시 자료제출을 최소한으로 하되, 세관이 요구시 언제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신청을 간소하게 하고, 대신 세관이 자료 요구시 제출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혜신청한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특혜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와 기본적인 확인서류를 요구하며, 이는 검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3.12월말 현재까지 미국세관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원산지검증은 주로 서면검증 위주로 진행되고 수입업체에 대한 직접 현장검증은 검증을 받은 업체의 비공개에 따라 명확한 통계를 파악할수 없지만, 관세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등의 상담접수 실적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면검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면검증을 받은 업종도 섬유류, 자동차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식품류, 측정장비, 타이어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으로부터 FTA 특혜를 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세관의 FTA원산지검증도 대부분 서면검증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주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세관당국이다. 다만, 미국 세관당국은 개별 수입건에 대한 검증을 일선세관에서 수행하지만, 섬유류에 대해서는 관세청 차원에서 서면검증을 한 후 필요시 해외 현장검증팀²⁹⁾을 구성하여 업체단위로 검증을 하기도 한다.

29) 섬유류 해외현장검증팀(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이 있다.

<그림 3-1> 한·미 FTA원산지 서면검증 기본절차도



자료 : 임성균,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계간 관세사」, 201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4, p. 23.

미국세관의 사후심사 단계는 사후세액 심사와 정산이 있다. 사후세액 심사는 수입통관지 관할세관의 사후심사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미 FTA 원산지 서면검증도 사후세액 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검증주체는 수입통관지 관할세관의 사후심사팀이 수행한다. 따라서 검증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관단계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섬유류, 자동차 등과 같이 미국 관세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검증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FTA원산지 서면검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C/O),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원가 명세서 4. 생산/제조 기록을 요구하고, 심사 후 추가자료 요구를 위해 이 자료에 한정되지 않음 (Such as but not limited to)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자신이 가진 자료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임을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한·미 FTA협정 제6.15조)

원재료명세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목록과 소요량 등을 기재한 서류인데,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요구한다. 원재료명세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 세번번

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이며, 우리나라의 환급제도에서 사용되는 자율소요량증명서와 유사하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명세를 나타내는 서류인데,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요구한다.

원재료명세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이라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나, 미국세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당연한 서류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제조 기록은 당해 수출제품의 생산/제조한 내역을 기록한 서류이며, 생산일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사진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위에서 열거한 자료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로서 대부분의 상세자료 요구시 언급하고 있다. 미국세관에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추가로 진행되는 절차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근거서류 또는 해명서류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의 서식에 필요한 서류명을 기재하여 송부한다. 동 서식의 앞면은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요청일자, 수입신고 일자, 제조자·판매자·선적인, 미국세관(CBP) 담당자의 메시지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4번 항목인 미국세관(CBP) 담당자의 메시지가 결국 원산지 검증관련 핵심적인 요청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정보제출자는 이 메시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뒷면에는 전반적인 정보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미국세관은 원산지 검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이외에도 업종과 품목에 따라서는 간단한 추가정보부터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섬유류 중 직물에 대해서는 기본서류 이외에 CBP Form 28의 별첨을 통해 매우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시만 해당되고, 세번변경 기준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요구자료 목록에 들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를 송부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세관에 제출토록 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가자료가 공개되어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

접 미국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세관은 자료를 비공개로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된다.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회계자료는 한국과 미국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합의한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적용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하여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CBP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원산지가 적정하게 관리되어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우선으로 그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적 결정을 내려할 경우에는 이행통지서(CBP Form 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을 통보한다. 즉, 예비결정이라면 예비결정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종결정이라면 당해 수입신고 건은 정산과정에 있고, 처리 세관에서는 더 이상 심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따라서 예비결정시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의미하며, 최종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 결정내용에 따르고, 정산 후 이의제기절차를 이용하여 구제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예비결정을 통해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그 내용이 그 다음 정산절차로 그대로 옮겨가서 최종 확정된다. 최종확정은 부족 납부관세의 납부결정이다. 그러나 만약 예비결정을 통해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자료를 보완하면 세관에서 검토하여 수입자가 신청한 특혜관세가 정상적인 것으로 결정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최종결정을 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종확정을 하였지만 정산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다시 세관에 이의제기(Appeal)을 할 수 있는데, 관세사 등이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잘 설명이 이루어져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수정된 이행통지서를 발행한다.

최종확정을 하였지만 정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수입신고 세관에 이의제기(보통 Appeal 또는 Protest라고 한다)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유사하다. 행정구제절차를 통해서도 수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

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검증이 종료되고 난 이후의 미국 관세청의 조치사항은 서면검증 결과 원산지 충족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유선으로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CBP Form 29를 통하여 예비결정 또는 확정 결정을 통보한다. 또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절차에 들어간다. 검증결과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정만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자의 행위정도(죄질)에 따라서는 범죄혐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penalty)를 받을 수 있다.³⁰⁾ 미국 관세법 제1592조(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제재)는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에 의하여 수입 물품을 통관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관세를 신청하였거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민사상 제재 또는 행정상의 제재³¹⁾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정정하여 미국 관세청에 통보한 경우에도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관세청측으로부터 먼저 잘못 신고된 사실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는 불가능하며 사전 자진신고를 이용하여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사기(fraud)에 의해 또는 특혜관세 신청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1회 이상 잘못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미국 관세법에 의거하여 제재(penalty)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록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조치는 과실에 기인한 것과 의도적(willful)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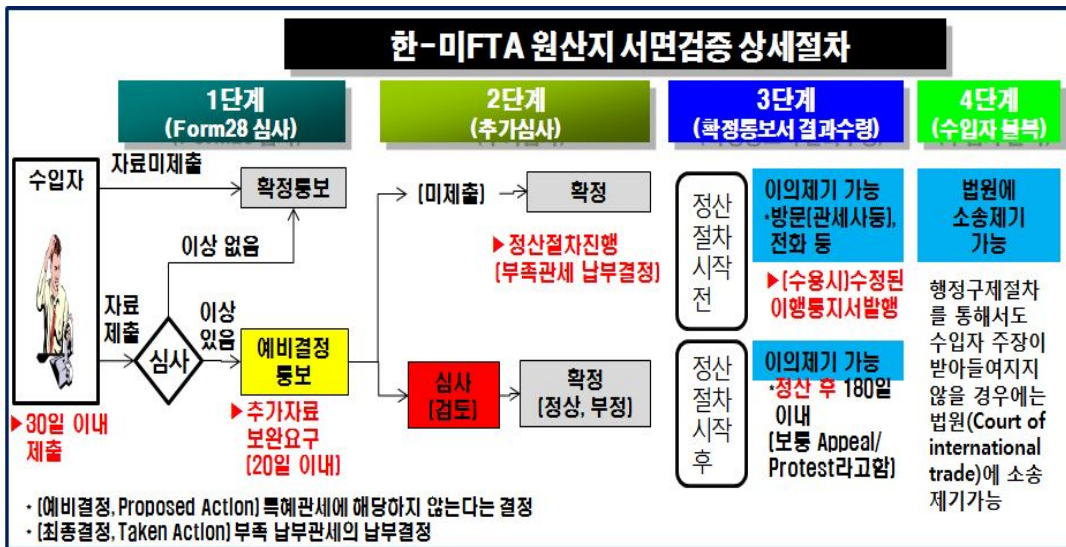
30) 한·미 FTA 관련 검증을 통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미국 관세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 관련 사항은 19 CFR Parts 10, Subpart R §10.1030~§10.1033에 규정되어 있다.

31) 미국 관세법 제1592조(19 U.S.C §1592) 상의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civil or administrative penalty)를 의미함

검증결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입 계약의 당사자가 본사와 지사 관계라면 결국 수입자나 수출자를 구분할 필요없이 공동책임 또는 동일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와 수출자가 전혀 다른 주체라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한다.

분쟁의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서에 명시할 수가 있는데, 명시된 바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주로 당사자 간의 타협 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 알선,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데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경우 과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계약서에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해결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출입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관할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림 3-2> 한·미 FTA 원산지 서면검증 상세절차도



자료 : 임성균,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계간 관세사」, 201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4, p. 23.

2. 현장검증 절차

현장검증이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검증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특혜원산지의 진정성과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관세청은 지금까지 주로 NAFTA 수입물품을 위주로 검증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타 FTA, 특히 한미 FTA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현장검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섬유류에 대해서는 협정 제4.3조에서 미국세관은 한국세관을 통해 원산지검증을 하되, 한국세관의 검증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세관에 통보한 후 공동으로 현장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검증과 같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 관세청(CBP)은 우범물품 선별기법에 의하여 해외검증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축적된 중국쿼터의 불법이용 수입자, 이와 관련된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자까지 연계된 자료(DB)에 의해 선별된 업체, 최초 수출입업체, 수입급증 업체, 제보된 업체 등을 선정한다.

또한 서면검증에서 원산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미국 내 다른 업체로 수출을 하였거나, 다른 물품을 미국 내 다른 업체로 수출을 한 사실이 있어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산지 위조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 수입이 급증하는 업체,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도가 있는 업체, 최초로 미국에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검증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관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지식재산권 등 제반 수입통관 요소들에 대한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후 심사 및 정산에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특정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만약 검증결과 불법행위를 한 회사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현재의 수입신고 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검증대상이 된 물품이 미국 내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한다. 한-미FTA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업체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섬유류에 대한 현장검증시 세관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세관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한국세관이 미국세관의 현장검증 이전에 대상업체에게 통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세관은 먼저 수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서를 송부한다. 질문서의 내용은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회사의 수출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조직, 운영, 회계 등과 수입부서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질문서를 보낸다.

이후 미국세관은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수입부서의 존재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무실을 미국세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세관에서 직접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사례는 있다.

현장검증의 기본절차는 현장견학(회사 방문 및 생산과정 시찰) → 문제된 건에 대한 추적조사(검증대상 수입건 중 샘플링하여 서류 추적 조사) → 서류심사(샘플링 건수 불일치시 확대 조사) → 전체 건에 대한 확장검증 순으로 이루어진다. 현지검증의 내용은 물품의 종류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검증의 내용 중 핵심내용은 첫째, 미국으로 수출된 검증대상 물품이 실제로 수출국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수출국가 생산공장의 생산능력과 상품유형별 생산량을 확인한다. 셋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생산된 섬유류가 특혜관세 취급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한다.

미국 세관당국이 섬유류 현장검증을 한 사례를 보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섬유제품의 규격 번호별 제조원가 구성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납세자 명부에 등재된 작업자의 이름, 출퇴근 시간, 작업시간, 생산량까지 세세하게 조사하며, 제품 제조 공정별 재단(cutting), 재봉(sawing), 마무리 작업(trimming)의 실제 참여인원 수, 이

름까지 확인한다. 또한 하청생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하청업체의 작업일지, 생산기록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직 또는 임시직 직원을 통해 생산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련 기록을 확인한다고 한다.

미국 관세청에서 섬유류에 대해 이어진 검증에서 부정적 결정을 하였다면 그 회사에서 수출하거나 생산된 다른 섬유류에 대해서도 FTA 특혜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하여 미국은 단지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섬유류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 관세를 부과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현장검증의 내용은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맞는지 여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비추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관세청의 현장검증 내용도 우리나라 관세청의 현장검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증관련 주요 제출자료 검토사항 및 현장확인 점검사항

<p>1. 검증관련 주요 제출자료 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② 각 적용대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③ 수출물품의 기준가격,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및 부가가치비율 산출 산식의 적정여부 (부가가치기준 적용 물품에 한함) ④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한 경우 채고관리기법의 적정여부 ⑤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의 적정여부 ⑥ 자가생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그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여부 ⑦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 적정여부 ⑧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p>2. 검증관련 주요 현장확인 점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 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② 각 재료의 입고 및 불출내역 ③ 생산 완료후 제품포장 및 출고내역 ④ 원산지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실태 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및 서명자 지정여부 ⑥ 원산지 자율관리업무 매뉴얼 개발 및 운영여부 ⑦ 원산지 전산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⑧ 무역거래 계약서, 적용환율, 환급세액, 회계장부, 입출금 전표 및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부가가치기준)

자료 : 관세청 내부교육자료 참고로 연구자가 재작성.

제4장 한·미 FTA 원산지검증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제1절 수출입기업의 검증대응 사례

1. 검증대응 성공사례

가. 금형 전문 제조업체³²⁾

“00기업”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 금형 전문제조업체로 미국 유수의 업체에 금형을 수출하고 있었다. 동 물품은 금액이 고가이며, FTA 적용실익(5.7%)이 크고,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는데, 실제로 미국세관에서는 CBP Form28 서식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원산지 검증은 선수입자 후수출자 조사 원칙으로, 미국내 수입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추가적으로 수출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이 요구되는게 일반적인 원칙이었으나, 동 건의 경우 정형거래조건 DDP로 수입통관의 주체가 수출자이므로 미국의 실제 수입자를 배제한 채 수출자에 대해 직접검증이 이루어지게 된 사례였다.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의 핵심은 한·미 FTA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으로, 검증대상품목인 금형의 품목별결정기준(PSR)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충족여부의 입증이었다. 세번변경기준은 HS품목분류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품목분류에도 해석상 차이가 생길수 있었기에 좀 더 명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또한 “DDP”라는 거래조건 특성상 수출업체에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최종 접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고, 수출업체도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 접수 이후에도 뾰족한 대책없이 상당기간 이를 방치함으로써 회신 기간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점은 적극적인 검증대응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게 하였다.

32) 명재호, “원산지검증을 통해 절전지훈을 배우다”, 청술관세법인, 2014.1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동 수출업체는 모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상황으로 국내조달된 것은 모두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작용함으로써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지 않고 있었고 원산지관리 자체 개념에 대해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터라, 검증 회신기간에 대한 촉박한 일정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CC)을 감안할때 뒤늦게나마라도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의 징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 수출업체는 FTA원산지관리 전문가 그룹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고 동 컨설턴트는 적극적인 주도하에 회사내 검증대응 자체 TF를 구성한 후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전사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업체에 대해 FTA 기초부터 전반적인 이론 교육과 원산지 판정, 원산지확인서 작성 기법 등 실무 교육을 병행하였다. 원산지관련 자료 취합 이후에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컨설턴트인 관세사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고 원산지판정여부를 심사하기로 하고, 수출업체는 제반 증빙자료를 취합 작성하고 영문번역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는 납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미국세관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확인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후 적합한 결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내 수출업체인 00기업은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고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안정적인 FTA원산지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동 사례는 상당수의 국내 수출업체로 하여금 국내조달 원재료는 무조건 한국산이라는 인식에 제동을 걸게 되었고,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수출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협력업체로부터 징구받아야 하며, 동 원산지확인서 관리에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됨을 인식하게 하였다

나. 스마트폰 제조업체³³⁾

(주)XX사는 스마트폰 전문생산업체로 미국, 유럽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다. 휴대폰(HS8517.12)의 경우 한·미 FTA시행 이전에도 관세율 0%품목으로 특혜관세 적용의 이익이 없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이외에도 일종의 행정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비증에서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동사는 본사(수출자)에서 미국 현지법인(수입자)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수입자인 미국 현지법인이 물품취급수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다. 국내의 본사는 한-미 FTA의 시행으로 대미 수출품인 스마트폰(8517.12)은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MPF 수수료가 면제되는 규정을 활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SH)을 충족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후 수입자인 미국 현지법인에게 제공해 왔고 이에 대해 미국세관에서는 XX사 미국 현지법인(수입자)에게 CBP Form 28에 따른 아래와 같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미국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에 자료요청하게 되었다.

미국세관이 요청한 항목으로는 물품명세, 수량, 포장 숫자 및 표시, 인보이스 번호, B/L, 당해물품 제조 공정 명세서, 제조공정에 소요된 직접경비에 대한 증명자료, 제조 공정에 투입된 모든 재료 목록 및 재료 가격, 제조 공정 명세서 및 당사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된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와 가격 그리고 당사국에서 제조된 재료의 명세 자료, 당사국에서 실질적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 자료, 원재료명세서(BOM), 비용자료, 생산기록, 각 모델별 생산자로부터의 생산 요약서, 생산 날짜 및 일일 생산량 명세서, 공장 현황표, 기계 수량과 작업 인원 수, 작업 분담 및 작업구역별 인원 숫자 등 이었으며 30일안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한미 FTA 특혜세율은 부인된다고 통보해온 것이었다.

이에 동 사는 원산지검증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기에 전문가 그룹인 00 관세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 검증대비 유의사항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초기 수입자 검증 시 관련서류 제공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출자, 생산

33) 문경도, “선택이 아닌 필수! 원산지검증 이렇게 극복했다.” 2013.11.4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자까지 현장검증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과 서면검증 단계에서 모든 검증이 끝날 수 있도록 평소 증빙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면검증 관련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직접 현장방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강조하고, 미국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법은 인터뷰로서 모든 검증과정에서 우선 시 하고 있으며, FTA 담당자 뿐 아니라 생산, 전산 등 일반직원도 대상으로 하고 복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술내용 상 상호 불일치성을 체크하므로 FTA 담당자 뿐 아니라 회계, 인사, 재무, 영업, 생산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사전 리허설이 요구됨을 교육하였다.

미국 세관의 직접사후검증 증빙자료 송부 기한 촉박하였고, CBP Form 28에 따른 원산지사후검증의 경우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실제적으로 최초 미국 세관에서 PWI (미국법인)에 CBP Form 28이 전달되어 원산지관리전담자에게 전달되는데 약 1주일이 소요되어 실제 자료 작성에는 3주 정도만 확보 된다.

한-미 FTA의 주요 특혜 적용 품목인 의류 등이 아닌 휴대폰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증빙자료 작성에 실질적인 어려움 많았다. 또한, 자료 작성기간인 30일 동안 요청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협약에 규정된 것처럼 요청된 자료를 영문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휴대폰의 경우 SMT공정, 조립공정, 포장공정 등의 각 작업공정도 및 작업지시서 등을 영문으로 바꾸는 작업에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시간부족과 자료작성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일단 원산지 사후검증 T/F팀 구성하고 팀별로 체계적인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물류팀은 역내산을 증빙하기 위해서 선적정보 확보, 재무/회계팀은 원가정보 및 직접·간접비용 자료준비, 통관팀은 선적서류 및 수출 신고필증 등 확보, ERP 시스템 관련 팀은 BOM 구성, 생산기록 등의 전산 정보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었다. 종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자 및 조직이 있어야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원가회계 및 어학능력 우수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본 결과 예측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며, 미국세관으로부터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었다.

다. 수산식품 가공업체³⁴⁾

한국에서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수출자는 동 수출물품의 원재료가 대부분 국산이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 번호(HTSUS No) 앞에 한국산(KR) 표시를 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한·미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특혜관세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통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생산 또는 제조관련 기록자료, 어획증명서류, 선박 국적증명서, 선장의 입출항 신고서류를 요청하였다. 미국의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에게 다시 동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하여 미국세관의 요청사항을 통보하였다.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식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TSUS 0307490050이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세번변경기준:CTH(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되지 않은 상품 또는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이다.)임을 확인하고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임에 유의하여, 최초 수출당시 관련자료를 재검토하여 보니,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미국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증명 대상물품 내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a)³⁵⁾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원산지소명서에도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여전히 (a)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수출입자가 모두 결정적인 오류를 했음을 확인하고서, 요청한 자료 내역중 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완전생산기준 물품의 사후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의 수출자는 미국세관의 요청자료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후 미국의 수입업자(미국 소재 한국동포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로 미국소재 H마트 등에 공급하는 업체임)를 통해 제출하였다. 특히, 주요 제출자료 중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여 제출하였다.

34) 임성균(2014)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35) (a)는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하단에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함

미국세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이행통지서(CBP Form 29)를 통해 수입자에게 자료보완 요청을 하였다. 미국세관은 자료보완 요청사유로 수출자가 수입자를 통해 미국세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접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향후 20일의 기간을 주되, 이 기간 내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특혜관세를 부인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수출자는 미국세관의 1차 검증결과 통지서를 미국의 수입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미국세관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미국 관세청은 2차 검증결과 수입자 등으로부터 세관이 요청한 아무런 정보도 제출되지 않아 해당 상품은 미국 관세율표에 대한 GN33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산식품의 관세율은 상향될 것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고지서가 발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입자는 화물반입신고서의 정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산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인된다고 하였다.

미국내 수입자는 2차 검증결과 확정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미국소재 한국계 미국관세사를 통하여 해당세관에 서류제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어서 해당세관에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때서야 미국 세관직원은 전체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이므로 방문을 미뤄달라고 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하면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다. 이것은 미국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정산제도(Voluntary Liquidation)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수입자가 2차 검증결과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미국세관 담당자로부터 종전에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산식품은 특혜신청의 자격을 갖고 있고, 세번 및 관세율은 특혜신청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특혜관세를 인정한다는 것을 통보받게 되었다. 동 사례는 또한 같은 세관에 계류되어 있던 쟁점물품과 유사한 한국산 식품류에 대하여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수산식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인데 최초의 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사후검증

대상이 된 것으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시정하지 않고 관심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출자는 미국세관에서 요청한 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로 오해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 셈이었으나, 미국내 수입업자가 현지 전문관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미국세관을 잘 설득하고 이 해시킴으로써 원산지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검증대응 실패사례

가. 자동차시트커버 생산업체³⁶⁾

“KK회사”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PVC비닐과 면사를 수입해 미국에서 자동차시트커버를 생산한다. PVC비닐(HS3921.12, 5.3%)과 면사(HS5204.11, 4.4%)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고 한·미 FTA특혜관세와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았다. 이후 미국세관에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28)를 통해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입증관련 서류(원재료내역서, 생산원가자료, 생산 및 제조기록)를 30일이내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동 업체는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미국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전달하게 되었고, 한국의 수출업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원산지증명서만 보내주면서 수출입자간에 상호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미국세관의 정보제공요청 의미 등을 판단하지 못한채 허둥대다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미국세관은 자료제출 요구기한이 지나도록 수입업체의 답변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행통지서(CBP Form28)를 통해 특혜관세적용배제 예정통지서를 전달하고, 20일 이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KK회사는 한국 수출업체에 긴급하게 자료요청을 다시 하게 되었고 한국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절차 없이 그대로 시간에 쫓겨 미국세관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세관에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증명서, PVC비닐에 대한 생산매뉴얼, 제품안전규격 데이터자료, 원가자료가 전부였던 것이다.

면사에 대한 자료는 한국내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미국세관에서는 KK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동 제품을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혜관세 적용배제 처분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동 회사는 PVC비닐과 면사에 대하여 각각 5.3%와 4.4%의 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미국세관에 납부하게 되었다

KK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한국산이라고 판단했고, 원산지상품에

36) 김석오, “미국 진출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사례 및 시사점,” KOTRA 기고문, 2013.12.30 자료 참고로 연구자 재작성

대한 기초지식이 없었던 것이었으며, 한국의 수출업체 또한 FTA특혜관세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가 부족하여 수출업체 양자 모두 원산지상품관리에 소홀하게 대처하였던 것이었다.

미국의 수입업자와 한국의 수출업체가 각각의 현지 전문가(관세사 등)그룹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수출당시에는 미흡하여더라도 검증대응과정에서 잘 대처함으로써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수 있었음에도 그리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나. 미국산 신발 수입업체³⁷⁾

“PP법인”은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국내 세관에서는 동 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원산지 조사를 하게 되었고, 동 법인에게 FTA특례법에 따라 관련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였다

동 법인은 상업송장 등 통관시 제출하는 일반적인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판정할 수 없어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의 수출자에 대한 국제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 세관은 국제검증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서를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여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Business Trip’(출장)의 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자료제출 기한을 2주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수출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a family emergency’(가사) 사유로 추가로 2주간 연장 신청하였으나, 국내 세관에서는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된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따라 2차 연장승인 요청을 거부하였고,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검증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37)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14관0062(2014.6.27), 심판청구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이 사례에서는 국내 수입자가 FTA특혜관세를 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세관에서 요구한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과, 수출자의 경우 ‘출장’ 및 ‘가사’ 등의 이유로 원산지 국제검증을 사실상 거부하여 실제적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가 부인된 것으로 수출입자는 FTA특혜관세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검증대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된 셈이다.

다. 미국산 과일 수입업체³⁸⁾

“AA무역”은 미국으로부터 과일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한·미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국내세관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우회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AA무역에 대하여 원산지 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다.

AA무역은 세관의 원산지 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입관련 자료(송품장, 항공화물운송장, 식물검역증,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와 농장 사진 및 위치, 농장에 대한 간략한 정보) 등을 원산지 증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식물검역 합격증명 및 상업 진흥을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제6.15조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단지 원산지 추정자료로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었을 뿐만 아니라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되어야 하나,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물품이 미국내에서 완전생산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세관에서는 혼입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 농장 등에 대한 현지검증을 실시하여 농장에서의 생산 단계부터 수출대금 결제 단계까지 일련의 단계별로 서류확인 및 정밀실사를 실시하였다. 현지검증 과정에서 수출국내 생산자는 생산자 농장등록증, 농장운영 납세증명서, 농장시설부자재 등에 대한 감가상각표, 작업인부 Time

38)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14판0150(2014.8.11), 심판청구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Card, 임금지불표, 비료 등 구매자료, 포장자재 구매자료, 내륙운송자료를 제출하였다. 서면조사 당시 AA무역은 수입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세관의 현지조사 결과,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의 타 출처에서도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혼입·수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국내세관이 원산지 입증자료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비결정을 통보하자 AA무역은 생산자가 타 출처에서 구입한 구매리포트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구매리포트의 경우 상세한 출처(구매처) 및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작업인부 Time Card 및 임금지불 내역 역시 어떤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입물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한-미 FTA」 제6.17조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기록’ 등을 최소 5년간 구비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시 생산자는 별도의 생산관리(생산량 및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 「한-미 FTA」 제6.1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후 국내세관에서는 동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한 검증 최종결과, 생산자료 불충족, 생산자농장 외 라임 혼입 및 구분·재고관리 부재, 기록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원산지상품으로 입증되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였다.

제2절 주요 산업별 검증사례³⁹⁾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수출입기업의 검증대상사례를 참고로 하여 주요 산업별 검증사유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세관의 검증대상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28)를 통해 검증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와 국내기업들이 검증받은 내용들에 대해 기업의 외부공개 제한을 반영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향후 한·미 FTA협정관련 특혜관세 혜택과 관련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

1. 자동차 부품 산업

HS품목분류 구조를 보면 자동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주로 제17부의 제8708호에 분류되나, 그 외에도 취급하는 물품의 기능, 용도, 재질 등을 고려하여 제84류, 제85류 등 HS코드 전반에 분류될 수도 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기준관세율은 무관세부터 4%사이로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관세율 2.5%수준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미 FTA협정문부속서 6-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제대로 적용해야한다.

가. 차량 휠부분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품업체 A는 차량용 휠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업자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관세특혜신청을 하였다. 미국 관세청에서는 그 상품이 미국 관세율표상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검증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및 생산제조기록 등 증거나서류를 제출하도록 CBP Form28서식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39) 임성균(2013c)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사례 1> 차량 휠부분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Racing wheel parts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Agreement.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CFR§10.1026.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이 사례는 미국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한 것으로 수출자입장에서는 원산지 사후검증위반으로 벌금부과 또는 관세추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물론 수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유지 및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했다 할 것이다.

차량용 휠은 8708.70에 품목이 분류되고,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 또는 부가가치기준(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8.10호 내지 제 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이다. 이에 미국 관세청에서는 요청자료를 통해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한 것이다.

수출업자는 작성하여 송부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협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를 준비하여 요청받은 정보제공사항에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관세특혜받은 점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했다(동 사례는 추후 진행과정이 확인되지 않았음).

나. 차량엔진 부분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품업체 A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엔진부분품(HS8409.91)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C/O를 첨부하여 미국 세관에 관세특혜신청을 하였다. 미국 세관에서는 그 상품이 미국 관세율표상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을 목적으로 CBP Form서식을 통하여 원산지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2> 차량 엔진밸브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items **ENGINE VALVES** listed on invoice AJ-00-00 associated with entry number EE6-00. classified under HTSUS 8409.91.5081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A Certificate of Origin was received, dated 07/03/2012.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re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U.S.C. 3805 not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First, pleas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 illustration of each of the parts. What are they made of? How will they be used and for what purpose?

Nex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 *A bill or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if the good is subject to a Regional Value Content (RVC) calculation) for each material;
-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r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이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으로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세관에서 요청한 정보중 일부는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부분품의 명세와 도해, 제품 및 용도설명서를 요청하였으며, 상품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세번, 원산지, 원재료명세서'를 요청하였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는 무관함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소명서(증빙서류)를 요청한 점이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부가가치 계산 근거자료 등 더 세부적인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는 간과하고 세 번변경기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 등은 수출자입장에서 원산지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원산지 결정기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무흐름도, 기술 명세, '구매주문서 및 대금지급 증명', 생산지원, 재고고관리방법, 간접원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 요청은 원산지를 떠나 가격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도 사료됨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련 대미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포함하여 다른 사항도 심사하려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검증사례에서는 생산기록, 작업자의 시간카드, 원재료목록, 생산자의 구매 주문서 및 생산공정에 관한 정보와 원재료가 완성품이 되기까지의 생산정보를 요구하여 HS8708.10~8708.99에 분류되는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충족여부를 확인하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전기·기계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기계류는 제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의 제84류와 제85류로 구성된다. 기계산업 분야에는 주로 원동기 및 펌프, 섬유및화학기계, 광학기기, 금속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식품가공포장기계, 제조인쇄기계, 공구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계산업의 평균관세는 미국의 경우 2.2%이며, 무관세를 제외한 경우에는 4.2% 수준이다.

한편 기계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이 두기준의 조합 또는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전체의 80%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된다.

가. 전동축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전동축을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 물품의 세번은 HS8483.1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임이 확인되었다. 미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각 원재료의 HS번호, 원재료명세서, 생산공정흐름도, 각원산지재료에 대한 소명서 등이 있고, 기타 과세가격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구매주문서와 대금지급 증명서, 재고관리방법, 간접원재료 관련 정보등을 요청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에 필요한 자료외에 다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될 일이다.

<사례 3> 전동축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 *Certification of origin,
-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 meets the GN33 (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of each material,
-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control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ther documents as neede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나. 프레스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프레스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미국 수입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로서는 FTA특혜관세신청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사례 4> 프레스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A previously submitted Korea-US FTA Certificate of Origin prepar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does not indicate the preference criterion for the FTA claim. A corrected Certificate of Origin which includes this info should be submitted.

Additionally, per 19 CFR 10.1005(a)(3), CBP is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supporting documentation relied upon by the exporter in preparing the certification and making the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per the Korea-US FTA. A failure to promptly provide the above requested corrected certificate of origi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will result in the denial of the FTA claim.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이 물품에 대한 HS는 제8462.91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부가가치기준(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이다. 이 상품에 대하여 미국세관에서는 수출업체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향신호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음향신호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미국 수입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로서는 FTA특혜관세신청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각종 정보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사례 5> 음향신호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As per 19CFR10.1026, please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s, so we can verify Korea FTA:

1.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for the good/material being verified.
2. Provide the description of the material/component and classification of each non-originating material/component and for each material/component whose origin is unknown, used to produce the good being verified
3. Provide description of the material/component along with Name and address of the Supplier/Manufacturer for each originating material/component used to produce the good being verified.
4. Has a classification ruling been issued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erials/components?
5. Was the sale of the good/material to a related party?
6. Was a Regional Value Content (RVC) used in ascertaining whether the good being verified originates, if so provide the estimated RVC qualifying percentage?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이 상품의 HS번호는 85123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호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부가가치기준(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이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생산공정 흐름도, 물품구성요소, 각 비원산지물품의 품목분류, 공급자 및 생산자의 주소와 성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부가가치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근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특혜관세적용요건 충족여부를 위해 거래당사자 요건을 확인하였다.

라. 전동모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전동모터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6> 전동모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item “3 Phase Electric Motors”

A Certificate of Origin was received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please provide details);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List of all parts, materials and component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and the countries of origin of each part, material, and component;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편, 이 상품의 HS번호는 850153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1.20호 내지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 미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각 원재료의 HS번호, 원재료명세서, 생산공정흐름도, 각원산지재료에 대한 소명서 등이 있음을 알수 있다.

마. 부분방전관찰시스템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정밀기계인 부분방전관찰시스템을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7> 부분방전관찰시스템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following goods, Partial Discharge Monitoring System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Also provide descriptive literature on this system, how it is used and composite materials Including drawings, photographs and/or diagrams.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편, 이 상품의 HS번호는 903031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 미국측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및 생산과 제조기록’ 그리고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 상품의 용도, 도면, 구성물품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바. 균형시험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측정장비인 균형시험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8> 균형시험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following goods, Machines for balancing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 A certification of origin
- Bill of materials
- Cost data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 Descriptive literature on this system, how it is used and composite materials, including drawings, photographs and/or diagrams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편, 이 상품의 HS번호는 903110이고, 세번변경기준(CTS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그 밖의 상품(소호 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베이스와 프레임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좌표측정기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부가가치기준(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이다.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도면, 사진과/또는 도해를 포함하여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원재료로 구성되었는지 이 시스템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및 생산과 제조기록’ 그리고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원가자료 등을 요청하였다.

사. 이송용기기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이송용기기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미국세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자료로 ‘원산지증명서, 해당 상품이 GN33 (b)의 원산지 기준 또는 GN 33(o)의 특정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각 원재료의 세번부호, 원산지, 원가를 보여주는 원재료명세서, 생산공정을 설명해주는 업무흐름도, 기술명세서, 기타 서류, 각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소명서’를 요청하였으며, 기타 원산지기준과는 별개인 과세가격 심사를 위한 ‘구매주문서와 대금지급 증명’ 및 ‘생산지원, 재고관리방법, 간접원재료’ 관련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별도 요청한 자료명세는 없지만,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사례 9> 이송용기기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goods “Parts of Gantry Loader and Conveyor Modifications Theta 3-C” ,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 *Certification of origin,
-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 meets the GN33 (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of each material,
-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control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아. 공구류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작업용 공구류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0-1>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Further descriptive information in the form of literature, brochures, catalogue excerpts, photos, engineering diagrams and/o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for merchandise described as a H and C on invoice D00 is requested. The specific

information requested should completely detail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exactly how it operates, and a breakdown of component material(s) for the cutting par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편 이 물품의 HS번호는 8207.7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다. 미국세관에서 검증을 위해 요청한 정보는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품에 대한 기술서, 브로셔, 카탈로그, 사진, 기술도형의 형태, 용도설명서, 기능설명서, 절단부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명세 등 상세한 기초자료였으며, 아울러 특혜관세적용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및 생산과 제조에 대한 작업일지 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세관에서는 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를 검증하였으나, 미국세관이 요청하는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상품은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확인되었다.

<사례 10-2>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보안통지서)

NOTICE OF ACTION : PROPOSE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origin of parts of H and C pursuant to General Note 33 and 19 C.F.R. 10.1001-10.1034.

The verification has revealed that the merchandise does no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ursuant to General Note 33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Although you provided a Certificate of Origin, you have failed to provide the substantiating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ated November 19, 2012, noted that this information was required.

This notice is to inform you that CBP intends on denying the claim for preference under the UKFTA after 20 days of the date of this notice. You may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good before the issuance of the final determination. If you do not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ll be denied and the entry summary will be rate advanced. If you do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it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주 : CBP Form 29(보안통지서 : 예비결정).

미국세관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신청을 부인하기에 이르렀고,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입신고서의 관세율이 상향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에 이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 원산지상품에 대한 입증설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원재료 명세서, 원가자료 및 생산제조기록 등 처음부터 요청한 정보제공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미국세관에서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통보하게 되었다. 동시에 수입신고서 관세율 상향과 가산세가 부가된 납세고지서를 발행을 예고하고 이러한 수입신고건의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동 건은 이후 다시 수출자가 적극 대응하여 최종적으로는 특혜관세 혜택이 인정되었다.

<사례 10-3> 공구류 미국측 검증사례(확정통지서)

NOTICE OF ACTION : TAKEN - Negative Determination

The verification revealed that the good does no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ursuant to General Note 33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b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The rate of duty will be 5% ad valorem. The entry summary will be rate advanced and a bill will be issued for the amount of duty plus interest owed.

You have the right to appeal the liquidation of the entry listed in this notice pursuant to 19 U.S.C. 1514 and 19 C.F.R. 174. A Bulletin Notice of Liquidation will be posted at the Customhouse where the entry was filed. Your appeal rights are allowed for 180 days after the Bulletin Notice of Liquidation is posted. Appeals filed prior to liquidation will be denied as untimely.

주 : CBP Form 29(확정통지서 : 부인결정).

3. 석유화학산업

HS품목분류표에 따르면 화학제품은 제5부(제27류)와 제6부(제28류~38류), 제7부(제39류)로 분류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화학제품원산지 규정은 주로 HS품목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향후 화학제품은 석유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에서 비교적 큰 관세효과가 기대된다.

가. 폴리머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 A는 폴리머를 생산하여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후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1> 폴리머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following goods, Genomer *00, and Genomer *00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R)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A breakdown of all components/materials used, exact percentages of each component/material used, and what country the component/material originated from.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편 이러한 폴리머의 품목분류는 미국, 한국, 일본 모두 품목분류가 각기 다르지만, 이 물품의 HS 번호는 3909.5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인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

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다.

이와 관련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및 생산과 제조기록을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화학제품의 경우에 요청되는 구성품/재료의 명세, 사용된 각 구성품/재료의 정확한 비율, 그리고 구성품/재료에 대한 원산지국 정보를 요청해왔다. 보통 화학제품의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국으로 보고 있으며, 화학공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살균제, 살충제 등 일부 품목만 CTSH이고, 나머지는 CTH)이므로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후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정보요청을 받은 수출업체는 폴리머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폴리머(3909) 자체의 중량이 50%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 한국 또는 미국산 이어야 하며, HS번호 제2811, 제2911에서 제3909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기준에 충족했음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섬유 및 의류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섬유제품은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의 총 1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의 섬유 및 의류산업의 범위는 통상적인 HS 제 50류에서 제63류의 섬유 및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HS 제4202호의 여행가방류(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류인 것에 한함), HS제7109호의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과 HS제9404.90호의 침구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을 보면 스웨터 32%, 합성스테인플섬유 4%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관세율 10%이상의 고세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 섬유류 원산지규정은 대부분 HS품목분류 체계를 토대로 하므로 섬유제품의 품목분류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가. 유아용 카펫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유아용카펫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이 상품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비가 저렴한 중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이었기에 한·미 FTA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만 수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업체가 임의적으로 한·미 FTA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1> 유아용 카펫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The following good, Kids Carpet Blue,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Included with your submission, supply this office with one sample of Kids Carpet Blue. Your reply is required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미국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정한기일까지 제출할수 없게 되었고, 미국세관에서는 특혜관세 신청한 수입신고건을 거부하였으며, 특혜관세신청을 임의적으로 진행한 미국내 수입업자의 책임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이 상품은 HS5705.0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즉,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8호, 또는 제5311호, 제54류,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이다. 따라서 미국세관은 세 번변

경기준의 충족 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원재료명세서, 생산 및 제조기록, 견본품을 요청하였다.

이번 사례로 볼 때 미국세관은 섬유와 의류제품의 검증을 위해 섬유생산검증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검증기법이 매우 탁월하여 동일한 수입신고서상의 수많은 품목 중에 섬유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 원산지 검증대상 물품으로 정확히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수입업자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세밀한 정보를 교환해야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출상은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 수입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요하며, FTA 특혜원산지기준에 부합된 C/O를 발급·보관하여야 하며, 대응과정에서도 수입업체와 면밀히 협의하여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검증 등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의류 부속품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의류 부속품중의 하나인 실과 같은 가늘고 긴 조각의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2> 의류 부속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Style 00번 2" Hook and Style 00번 2" Loop,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Please include a complete flowchart of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steps for each of the above styles.

In addition, please 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s) for all the textile fibers, textile yarns, sewing threads and fabrics.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sample - 1 Yard of 2" Black Hook (00번) and 1 Yard of 2" Black Loop (00번)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미 FTA에서 직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외규정에 원사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검증을 함에 있어서 원사부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섬유구성요소에 대한 직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명세서, 원가자료, 제조 및 생산 기록은 물론이고, 모든 제조공정 단계별 전체 공정흐름도와 모든 섬유, 원사, 재봉사와 직물에 대한 생산자의 주소, 성명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공정흐름도와 생산자에 대한 정보요청은 해당 상품이 역내산으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이다. 공정흐름도는 원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고 생산자의 주소, 성명은 역내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직접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생산을 한 생산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다. 편물제 양말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편물제 양말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3> 편물제 양말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 the rule of origin
- Purchase order and payment record for the shipment, as well as the Certification of origin
- Manufacturer documentation: Factory profile of the manufacturer, including type and number of machinery and number of employees
- Fabric documentation: Purchase order, invoice, payment record, bill of lading or other transport document
- Yarn documentation: Purchase order, invoice, payment record, bill of lading and other documents
- Yarn breakdown: provide value breakdowns for the fabric, accessories, yarns, cutting and sewing and indicate the country where each occurred
- Work indication of work order of yarn, fabric, knit-to-shape manufacturer including dyeing and finishing, with employee list as well as payroll recor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이 상품의 HS는 제6115.21호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CC + 공정기준(다만,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이지만 제외규정에 의해 원사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원사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원단 자료, 원사 자료, 원사 내역,공

정기준의 충족여부, 제조자에 대한 정보, 종업원 목록과 봉급지급 기록,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사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세관에서 아주 엄격하게 원산지 검증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아 원산지규정에 충족되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관련자료의 보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라. 스카프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스카프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이 상품의 HS번호는 6214.30(인조섬유제의 기타 의류)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CC + 공정기준(다만,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이지만 제외규정에 의해 원사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미국세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에 대하여 원자재 송품장, 운임지급명세서, 한국세관의 통관기록, 거래기록, 재단기록, 생산주문 기록 및 공장의 생산기록,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수출업체는 원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내에서 가공공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를 객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만 동 상품이 미국에서 한·미 FTA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례 14> 스카프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 1) If the merchandise was fully manufactured in Korea provide factory production records such as raw material invoices, freight bills, Korean Customs clearance records, transaction records, cutting records, production order records, and certification of origin.
- 2) If the merchandise was not fully manufactured in Korea: provide out processing arrangement records (OPA) including names and addresses of all manufacturers directly involv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 description of the processing in each country, export and re-importation records.
- 3) If production involved sub-contracting: transaction records and factory production records of all subcontractors.
- 4) 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at goods claimed to be produced by a factory were the goods actually exported.

You have thirty days from the issuance of this notice to respon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또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서류도 요구하였는 바, 원산지증명서에는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항목마다 챙겨봐야 하고, 수출서류는 수출신고필증외에 필요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하겠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특정하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형식적 절차를 하자로 하여 특혜관세가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 나일론 스판덱스직물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나일론 스판덱스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5> 나일론 스판덱스 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The following goods, nylon spandex foil fabric,

Please provide certificate of origin and submit valid affidavit of origin from the producer of the fabric. Affidavit must include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item produces (including fiber content); purchaser; date of sale; telephone numbers of persons executing the affidavits for verification purposes; etc.

If affidavit reference invoices and/or purchase orders, a copy of such invoices and/or purchase orders must be provided. Please provide fabric specification and mill certificates for the entered fabric. submit production records (weaving records) to substantiate that the fabric was in Korea.

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at goods claimed to be produced by a factory were the goods actually exported.

Importers must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allow for clear and proper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Importers are required to provide an invoice with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e invoice submitted with the entry packet was deficient.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1. State fabric construction
2. Provide the generic name of each fiber and indicate whether the fiber is staple or filament.
3. State respective weights of coating/laminating substance versus textile.
4. State if fabric is coated/laminated on one or both sides.
5. State if plastic coating is compact or cellular

6. State if coating is colored
7. State weight per square meter.
8. Use of the coated fabric

Please provide a sample 12 inches long times the entire width of the fabric
 Documentation provided to this office must be in English.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미국세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및 직물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유효한 원산지설명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원산지설명서에는 원산지구성요소를 포함한 각 제품의 생산명세, 구매업자, 판매일자, 검증을 위한 원산지설명서 작성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였다.

원산지설명서에 언급된 물품명세서 등의 자료에는 당해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직물에 대한 상세명세와 공장등록증, 그리고 동 직물이 한국에서 제직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생산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품이 실제로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할때는 수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반면에 수입자에게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였는 바, 수입자는 결국 수출업체에 동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인바 수출업체에서는 수입업체가 미국세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해야만 한다. 미국세관이 수입업체에 별도로 요청한 자료로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 물품에 대한 상세명세가 표기된 송품장, 송품장외에 별도로 직물구조 설명서, 섬유의 일반적인 명칭, 섬유의 성분(스테이플인지, 필라멘트인지), 섬유에 대한 코팅/적층물질의 각 중량, 직물의 한쪽 또는 양쪽면에 대하여 코팅/적층여부, 플리스틱 코팅방법(조밀방식인지 세포방식인지), 코팅색상여부, 제곱미터당 중량, 코팅직물 사용여부 그리고 직물의 전체 폭이 12인치 이상인 경우의 견본품 제출을 요청하였다. 모든 제출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분명히 적시하였다.

수출업체는 직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공인절차를 밟아 확인받고, 그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바. 원형니트직물의 폴리에스테르직물, 합성섬유, 면직물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원형니트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관세를 미국세관에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6> 원형니트직물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the following good(s), circular knit fabric,

please submit a copy of all the documents listed on the attachment as well as a 1/2 yard sample of the circular knit fabric (acet slinky vit-00 ivory/green) imported in this shipment (invoice #v00) and the fabric construction details (see attached form). also submit a copy of the original purchase order, invoice and proof of payment for this fabric. note box #16 below.

regarding the manufacturing of this shipment of fabric (s): (make sure all records are specific to your goods imported on this shipment (for ex. shows style names and/or numbers, purchase order numbers, lot number, factory assigned work number or contract number) and are translated if necessary)

1. a timeline for all steps of production from fiber production to yarn to greige fabric to all processing steps performed (washing, dyeing, printing etc).

provide the names and addresses for each step and dates supplied and/or produced.

provide the shipping documents relating to each step of production and from the shipper to the carrier.

2. for each of the different fiber(s) used in the production of your fabric (s),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where the fibers were obtained and/or produced.

state the date of production for each. if purchased by the mill, provide invoices and proof of payment, shipping documents and inventory documents showing the arrival of these fibers to the mill.

provide any government documents (ex. certificate of origin, export licenses) issued showing the exporting of these fibers to the mill if applicable.

3. state where each of the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your fabric(s) were spun and/or extruded. 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yarn producer.

provide documents showing the setup of the bobbins, cones, etc. and detail explanation of each process (opening, drawing, spinning, twisting, carding, combing etc.)

how they were produced including type of machines used. state each step of production.

provide a list of the types of machines used to manufacture and process the yarns used in your fabric.

provide pictures of the actual machinery and/or a brochure from the mill showing they have the machinery used to produce these yarns.

if the mill purchased these yarns, 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yarn supplier, provide supporting invoices, proof of payment and shipping documents showing the arrival of these yarns to the mill for these yarn(s).

provide any government documents (ex. certificate of origin, export licenses) issued showing the exporting of these yarns to the mill.

4. 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weaver/knitter (origin conferring producer) and date in which the weaving/knitting took place.

provide the mill's documents showing the loom setup, dates of production and the list of steps and processes (dyeing, printing, washing etc) including the chemicals and machines to be used for your specific fabric(s) from this shipment.

provide any production records maintained on the factory floor (used to instruct the workers).

provide a statement from the mill as to the normal length of time it takes to produce the amount of fabric on this shipment and the dates in, which it was woven/knit.

include the actual workers time cards showing the hours spent during the production of your specific fabrics, the employee's names, job description and salary.

5. if the washing/dyeing/printing of any other processes are performed by

any other factories, provide shipping documents and/or any government documents showing the export or movement of the greige fabric to the other mill for processing.

provide documents from the processing mill showing what they each performed (each step) including the chemicals used and the machines used.

provide shipping documents showing the movement of the finished fabric to the actual shipper/exporter.

6. provide a 1/2 yard sample of each fabric along with complete fabric construction details (fiber contents, statement for each yarn if filament or staple, thread count, yarn sizes, weight, width, weave, processing etc.)
7. provide copies of the packing list and inspection documents of the finished fabric leaving the mill.
8. provide any shipping documents and exporting licenses of documents issued showing the fabric leaving the country of production to the u.s.
9. provide a profile of the manufacturing factory (weaver/knitter/origin conferring producer).

provide a brochure, website address and/or pictures (photographs) of the outside factory of the mill (showing name) along with pictures of the looms or knitting machines used for your specific fabric production.

show the number and types of machines at this manufacturing facility (a complete inventory of factory machinery including the number and types of weaving (looms)/knitting machinery). include the use for each machine.

state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umber of shifts by day. state how much yardage they can be produced in a day. also include a copy of this company's registration form with government seal. the registration form should include the name, address, license number, date of issuance and if applicable, and expiration date.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한·미 FTA에서 직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외규정에 원사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검

증을 함에 있어서 원사부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섬유의 구성요소에 대한 직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원형니트직물에 대하여 요청하는 내용은 폴리에스테르직물, 합성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산업 중 직물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원형니트직물을 통하여 수출되는 직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대응을 준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상품은 뜨개질 편물로서 HS 번호는 6002.40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 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이며, 단서에 의해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직물구조이 상세명세, 구매주문서, 송품장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외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많은 자료를 통하여 동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이다. 수출업체에서는 요청하는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기준에 충족하는 자료로 한정하여 제출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세관이 수출업체에 요청한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금번 선적직물의 제조 관련: (모든 기록은(예컨대 스타일 명칭표기, 구매주문 번호, 롯트 번호, 공장지정 작업 번호 또는 계약번호) 금번 수입물품에 특정됨을 확인하기 바람, 필요시 번역되어야 한다.)

(1) 섬유 생산부터 원사, 미가공직물(생지), 기타 수행된 모든 가공단계 (세척, 염색, 날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대한 시간 경과
 각 단계 별 생산자(및 /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에 대한 제공
 각 생산단계와 관련한 수출자의 운송 관련 서류의 제공

이는 섬유 → 원사 → 직물 → 날염 등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생산단계의 시간경과를 확인하고, 각 단계별 생산자, 공급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다.

(2) 귀사의 직물 생산에 사용된 각기 다른 섬유에 대해 그 섬유 구매처와/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의 기술, 각각에 대한 생산일자를 기술. 만약 공장에서 구매하였다면 이러한 섬유가 해당 공장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송품장과 대금지급 증명, 선적서류와 재고기록 자료의 제공,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섬유가 공장으로 수출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수출증명과 같은 정부발행 서류의 제공

이는 ‘yarn forward rule’의 핵심인 원사를 생산하기 위한 섬유를 어디에서 구매했는지(국내에서 구매한 것인지, 해외에서 조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통하여 원사는 반드시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FTA 특혜 관세혜택은 바로 부인되는 것임이다.

(3) 귀사가 생산한 직물의 생산에 사용된 각 원사 생산자 이름과 주소제공, 보빈, 콘(CONES) 등의 단계를 나타내는 서류제공. 그리고 도면작업, 도안, 방적, 연사, 카딩, 코밍 등의 각 과정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사용된 기계의 유형을 포함하여 어떻게 그것들이 생산되었는지 각 생산단계를 기술, 귀사의 직물에 사용된 원사의 생산과 가공에 사용된 기계의 유형 제공, 공장에서 이러한 원사의 생산에 사용된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부터 실제의 기계 사진과/또는 책자 제공
만약 공장에서 이러한 원사를 구매하였다면 각 원사 공급자의 주소, 성명을 제공하고, 이 원사를 위해 공장에 이러한 원사의 도착을 보여주는 근거 송품장, 대금지급 증명과 선적서류 제공, 공장에 원사가 수출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발행된 C/O, 수출증명서와 같은 정부 증명서류 제공

이는 원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지, 해외에서 구매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산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정보제공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4) 제직자/편직자(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제직/편직이 이루어진 날짜 제공, 생산 직기의 완비, 일자 및 금번 선적된 귀사의 특정 직물을 위해 사용된 화학물질과 기계를 포함한 염색, 날염, 세척 등의 단계별 목록과 공정을 보여주는 공장서류 제공,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데 사용된 공장 작업장에 관리되어온 생산 기록 제공, 금번 선적분 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제직/편직에 대한 시간으로써 공장에서의 기술 문서 제공, 귀사 직물의 생산동안 소요된 시간을 보여주는 실제 작업자의 시간카드와 피고용인의 성명, 업무분장 및 보수 포함

이는 실제적으로 국내 제조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전체적인 공정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임이다. 실제 작업인부들의 생산기록일지부터 업무분장, 보수지급내역 등을 통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을 알수 있다

(5) 만약 세척/염색/날염의 어떤 다른 공정이 다른 공장에서 수행되었다면, 공정을 위해 다른 공장으로 생지 직물의 수출 또는 이동을 보여주는 선적서류와/또는 정부 발행 서류 제공, 화학물질의 사용과 기계류의 사용을 포함하여 각 단계에 그들이 각기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정수행 공장으로부터 비롯된 서류제공
완제품 직물이 실제 선적자/수출자에게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선적서류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적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에 그런 서류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특혜관세 혜택은 부인될 것이다.

(6) 완제품 직물의 구성 명세(섬유원료의 구성, 만약 필라멘트사 또는 스테이플사라면 각 원사에 대한 섬유원료 구성, 기술서)와 함께 각 직물의 1/2야드 견본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견본을 요구한 것이다.

(7) 공장에서 출고한 완제품 직물의 포장명세서와 검사서류의 제공

이는 완제품 직물을 수출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8) 직물이 생산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적서류와 발행된 수출 증명 서류의 제공.

이는 수출국에서 완제품 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적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한 것이다.

(9) 생산공장(제작/편직/원산지 부여 생산자)의 개요,귀사의 특정 직물공장에 사용된 직기 또는 편기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나타난)외부 생산 공장의 책자, 웹사이트 주소와/또는 사진 제공,이 생산시설(직기/편기의 숫자와 형태를 포함한 공장 기계의 완전한 재고)에 있어 기계의 대수와 형태를 제시. 각 기계의 사용처 포함, 피고용인 및 일일 교대조의 개수 기술. 또한 일일 생산가능 야드는 얼마인지 기술. 또한 정부에서 밀봉한 이 회사의 등록서(폼)의 사본 포함. 등록서에는 성명, 주소, 허가번호, 발행일자 및 활용가능 여부, 만료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이는 수출업자의 생산공장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자가 직접 생산했다면 고용인력, 생산량 등을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수출자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미국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매우 많고, 다양하며, 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류제품 중에서도 직물류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할 정도의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인조섬유제 의류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 A는 인조섬유제 의류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미국 수입업체가 한·미 FTA특혜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이에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7> 인조섬유제 의류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ation;

1.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2.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 meets the General Note 33 (b) rule of origin or the GN 33 (o) specific rule of origin;
4.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f each material;
5.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6.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7. Submit a picture and/or samp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e information checked in section 12 and 13 of this form should also be answered/submitted.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미국세관에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목록을 제시하였다

1. 원산지증명서 또는 규정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 원산지재료에 관한 증빙서류;
2. 업무흐름도, 제조공정을 설명하는 기술명세서와 기타서류
3. 상품이 어떻게 GN33(b)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GN33(o)의 특정물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4. (만약 상품이 부가가치 기준을 따른다면) 각 원재료의 세번부호, 원산지 및 원가를 보여주는 원재료명세서
5. 가격을 입증하는 구매주문서와 대금지급 증명
6. 기술지원, 재고관리방법, 간접원재료, 기타 이에 관련된 서류
7. 수입상품의 사진과/또는 견본 제출

이번 사례로 볼 때 미국세관은 섬유와 의류제품의 검증을 위해 그간 NAFTA를 통해 활성화된 검증기법을 통하여 한·미 FTA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수출업체는 미국세관의 검증요청에 따른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미국세관의 검증의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특히, 품목분류에서부터 정확하게 검토하여야만 한다. 관세청 평가분류원에 사전에 품목분류사전회시신청을 통하여 객관성있는 분류를 하여야 하고, 미국세관과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비한 검토 또한 병행해서 이뤄져야만 한다. 사후검증에 실패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의류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5. 농수산물산업

HS품목분류 구조상 농수산물산업은 제1부(산동물 및 동물성생산물)부터 제4부(조제식품)까지 총 2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의 농수산물산업의 범위로는 산동물 및 동물성생산물(HS제1류~제5류), 식물성생산물(HS제6류~제14류), 동식물성유지(HS제15류), 조제식품(HS제16류~제24류)으로 세분화 한다

미국의 관세율을 보면 농수산물산업의 경우 중가세,종량세,혼합세 및 계절관세로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 10%이내이다. 한·미 FTA에서 농수산물산업의 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기준 및 완전공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개별품목별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농수산물산업에 대한 한·미 FTA검증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산물

우리나라의 수출업체 A는 seafood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때 수산식품이 원재료가 대부분 국내산이었기에 한·미 FTA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는 부호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명기하였다. 미국의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상에 한국산(KR)표시를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한·미 FTA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신청을 하였다. 미국세관에서는 동 물품이 미국 관세율표 GN33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CBP Form28 서식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사례 18> 수산식품 미국측 검증사례(정보제공요청서)

14. CBP Officer Message

The following seafood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Korean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manufacturing records. The documentation should also include the catch document, ships flag and captain's declaration.

주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14번 항목의 내용만 발췌 정리.

미국세관이 요청한 자료의 목록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명세서, 원가자료 및 생산과 제조기록 같은 근거서류와 근거서류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로 어획증명서류, 선박의 국적증명서, 선장의 입출항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번호는 0307.49이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되지 않은 상품 또는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훈제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6호 내지 제03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이다.)인 점을 고려할 때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미국세관에서는 완전생산기준(WO)의 충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다.

미국의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다시 동 정보제공요청서를 송부하여 미국세관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와 미국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의 답변서를 기초로 미국세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미국세관은 1차 검증결과를 통보하면서, 추가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면 특혜관세를 부인하겠다고 하였다. 동 내용은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정한 기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게 되었고, 미국세관에서는 이에따라 특혜관세 부여를 취소하고 수입자에게 해당관세를 추징하겠다고 2차

검증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입자는 미국소재 관세사를 통하여 해당세관에 서류제출사실을 통보하고, 미국세관의 일방적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차례 접촉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적합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송부할때에 협정상 특제된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내용만 표기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첨언하여 상대국 관세청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에서 최종 수입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자들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기한을 명확히 지켜야 하고, 자료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수출입자간의 협조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나. 과일쥬스 및 과일(한국측 검증사례)

우리나라 세관은 미국산 과실류의 수확부족으로 인근 국가(브라질 등)로부터 미국내로 다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인근국가 과실류가 미국산과 혼재되어 또는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원산지 상품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일쥬스와 과일에 대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세관은 동 상품이 HS 0805.10 또는 0805. 50에 각각 분류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어 한·미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품의 원재료 목록, 미국내 생산 및 수확관련 기록자료, 수확된 물품의 입출고 내역, 운송서류(선하증권)를 요청하였다

검증결과 검증대상인 과실류 등이 미국수출자 농장에서 직접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여 미국내에서 완전생산했다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미국측에서는 수출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품질보증서 또는 식물검역증상의 원산지 기재를 이유로 미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품질보증서를 제시한 과일쥬스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였으나, 식물검역증을 제시한 과일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증세관에서는 완전생산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상대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명한 협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인정해주는 자료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서는 직접검증이므로 상대국 생산지에 출장하여 실제로 생산되고 가공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불특정 원산지상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관세특혜를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제시

FTA체제하에서 특혜관세 적용에 필수적인 것은 원산지 규정의 준수이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 준수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FTA원산지 사후검증이다. FTA원산지 규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가 잘못 판정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검증은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후검증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에 원산지증명으로 인한 원산지상품의 수출입거래시에는 반드시 사후검증을 대비한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특혜에 대한 관점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후에 검증을 받게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검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TA 협정국 정부기관의 검증에 대하여 그나마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관세사 등과 같은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반면에, 대응에 실패한 사례는 검증초기에 원산지증명에 따른 원산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미숙지로 검증대응에 효과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FTA 관세혜택을 받거나 상대수입국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 원산지상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 봐야 할 것이다. 관련 협정문에 대한 내용, 당해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HS품목분류가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 원산지 상품으로서 협정별로 주어지는 원산지 규정에 맞는 것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 물품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FTA관세특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상대국의 수출입통관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이 수출입거래가 되고 있는지, FTA협정 및 상대국내 법령에 적합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출입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고 체계

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을 직접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입자에
 게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TA원산지 상품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고, 당해기업에 닥치지 않은 한은 그 어떠한 정보활용에도 긴장하지 않기 때문
 에 원산지 증명과 사후검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다.

특혜관세를 부여한 협정당사국의 정부기관의 꼼꼼한 검증수행업무에 비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은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업무에 대해 소홀하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
 수출입자는 원산지 상품을 수출입거래시 반드시 사후검증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절차와 형
 식,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뒤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국가간 통일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작용한다. 각 증빙서류에 대한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리 적용됨으로
 인해 심지어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막대한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는것도 확인된
 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각자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
 려함으로써 FTA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가. FTA 원산지관리 전문그룹 육성

한·미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검증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FTA원산지관리 전문그룹을 육성하고 관련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통해 그 간 배출한 인원을 보면(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 자료) 2014.11 현재까지 총 2,014명이 된다. 평균 합격률이 30%미만이며, 인적구성으로는 학생, 산업체재직자, 컨설팅 그룹 등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로는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거대 경제권역인 미국, EU,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영토가 세계3위 권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고, 이들 전문그룹을 수출입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FTA원산지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지원방법보다 더 활발한 고용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FTA원산지 증명과 그에 따른 검증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추진하여야한다.

나. FTA원산지 검증대응지원센터 설치운영

FTA 사후 검증 기능인 원산지검증 절차는 각 협정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세관의 검증 절차나 업무가 국가 간 서로 달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원산지 간접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 수출국 관세당국의 무응답, 회신기간경과, 부실검증 및 협정문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및 심각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서는 관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양 체약 당사국간에 협정의 해석 및 집행절차의 조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 간 FTA의 원활한 집행과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서는 상대국 원산지 당국과의 검증 절차 및 협정해석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 FTA협정상 규정된 절차를 양 당사국이 운영함에 있어 실무적인 내

용에 대한 해석과 견해차이로 FTA 관세특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수출입업체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상존할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당사국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물질적 손해가 없지만,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업체는 시간과 부대비용에 따른 불이익앞에 놓여있는 형편이므로 양 당사국의 정부기관에서는 FTA를 촉진하기위해 각종 활용지원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협정상 규정된 절차와 실무적인 내용의 통일화된 그리고 정형화된 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수출입기업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양 당사국간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를 당사국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조정해가는 체계적인 합리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원산지검증대응지원센터를 범정부차원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FTA 초기부터 지금까지 FTA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를 전국망에 걸쳐 설치하고 운영해온 것처럼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사후조치를 해결해낼수 있는 것으로 FTA활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검증대응지원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FTA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수출입기업에게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 입게되었거나, 입게될 경제적 손실에서 만회할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산업별 원산지검증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협정별 원산지 검증대응 실무지침과 검증사례 수집 배포 및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계약상대국의 검증대응을 대비한 검증대응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료갱신을 추진하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 사후검증사례를 분석·정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대국의 수출입통관절차와 원산지검증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설명과 그 필요성을 수시로 수집 분석하여 수출입기업에 온오프라인 및 각종 설명회 또는 교육기회를

40)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4, p. 63.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산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집중 훈련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실무지향 원산지관리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FTA 활용 지원정책이 홍보와 포괄적인 교육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기업에게 물질적 손해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관련 정책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입거래실무와 국내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중심의 컨설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을 대비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FTA-PASS와 ERP와 연계된 자율점검표과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기록보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사전에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표준질의서 등의 Tool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⁴¹⁾

이와 관련하여 현재 FTA유관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FTA포털(홈페이지)과는 별도로 수출입을 하는 또는 수출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검색(예:FTA라고 검색어로 입력)하면 FTA관련 종합적인 사항을 확인해볼수 있는 검색표준포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검색포털에는 유관기관과로 연계할수 있는 링크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운영주체도 정부기관 합동기관(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유관기관별로 FTA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측면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상호간에 중복된 내용도 많고 하위메뉴도 넘 다양하여 검색에 피로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애로사항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FTA포털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원산지확인에서 증명 그리고 검증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제반 협정별 준비서류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중요하다. 통일된 서식이 없어서 검증 및 증명에 따른 업무처리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모든 서식에 대해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협정별 국가와 협의하고 관련 표준지침을 준비하고 영문과 한글로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는 대응지원체제가 중요하다. 아울러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수출입기업들의 체감온도를 파악하여 사전예방과 실무적 지원을 통한 실

41) 임쌍구, “국내 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대비 시대와 제도상의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p. 72.

익이 있는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대응에 자신감을 부여하여 수출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등 권익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관세사 역할 확대와 지원시스템 구축

원산지검증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및 동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에 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관세사의 역할은 C/O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대비함으로써 수출입업체가 FTA 원산지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후추징 및 협정관세적용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검증단계별, 검증대상자별, 검증사안별로 예상되는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관세사가 전문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⁴²⁾

한편 원산지결정 및 사후검증의 시작점은 정확한 품목분류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수출품목에 대한 HS번호 부여는 기업이 그 간의 관행이나 관세청 평가분류원을 통하여 직접 부여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관세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정국 세관의 관련규정이나 관행에 능통한 현지 관세법인의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사 수익구조하에서는 이러한 업무책임을 관세사에게만 전가시킬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관세사들은 FTA 체결 이후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입통관서류 및 원산지확인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시키고, 관세사들이 FTA 특혜관세 적용과 검증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세무사의 기장대리의 경우처럼,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42) 윤남현, “FTA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세사의 역할,” 「계간 관세사」, 2012년 여름호, 한국관세사회, 2012, pp. 69-70.

대신하여 관세사들이 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원산지관리 및 검증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⁴³⁾ 또한 이와 관련한 언어상의 장벽과 비용의 문제가 수반되는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도 요구된다.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가. 협정별 원산지 관련규정 및 절차 준수

FTA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에 따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FTA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실제적 규정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검증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기한 미준수, 원산지증명서 작성 미숙, 관련서류 미보관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신경쓰면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규준수도 잘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올바른 적용을 위해 이에 부합되는 생산패턴을 유지하며, 사후검증에 대비한 관련 입증자료를 협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때 관련 자료는 국내세관 검증을 대비한 한글본과 미국세관의 검증을 대비한 영문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보관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협정문의 영문과 국내법상 한글 조항이 상충될 경우 협정문의 영문규정을 우선시한다는 점과 미국측에서 검증시 요청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도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품목분류의 정확성 유지

수출물품에 대한 HS번호가 틀리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할

43) 고태진, “중소기업 FTA 지원확대와 관세사 역할 강화,”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 p. 115.

수 없다. 이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출물품의 HS번호를 정확히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은 결국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청평가분류원을 통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아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⁴⁴⁾

다. FTA 원산지관리 전문그룹 활용

FTA 원산지관리 업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 협정국과 간의 관계에서 있어지는 것이므로 대충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 관리업무는 영어권 특성상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세월 동안 원산지 검증기법 등을 개발하고 원산지 검증을 특성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원산지관리 특성화 그룹(관세사, 원산지관리사)을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 관리업무를 특성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직원을 활용하거나 신규 인력을 고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FTA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양성하고, 회사 자체내 특성을 심도있게 관리함으로써 불시적으로 요청되는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업무에 효과적으로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체계를 기업내 ERP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자료관리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되지만, 국제원산지정보원이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인 FTA-PASS 또는 FTA-KOREA를 활용하도록 한다.

라. 수출입자간 FTA 검증의 책임한계 명시

검증이후 원산지규정의 불합치 등을 이유로 수입자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경우 귀책사유 관계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자간, 그리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국내

44) 임성균,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계간 관세사」, 201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4, pp. 75-76.

공급자간 구상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⁴⁵⁾

따라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산지증명에 대한 책임소재를 수출입계약서 또는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개별 수출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증거를 남겨둠으로써 수출 이후에 발생할 무역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⁴⁶⁾

사후검증시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최종적으로는 수입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가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한 통지를 수입자로부터 너무 늦게 받는다면,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계약서 또는 별도의 계약서 등을 통해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을 들 필요가 있고, 상세하게는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통지를 받음에 따라 검증대응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면책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세관의 검증결과 특혜관세 혜택 거절로 결정되어 이미 받은 특혜관세에 대해 추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해 유형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후검증 결과 특혜관세의 추징에 대한 부담문제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수입자가 현재의 수출자와 거래함으로써 특혜관세를 추징받아 현재 수입자의 국내거래에서 원가가 높아져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든지, 기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FTA 특혜관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혜관세 추징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마. 협력업체 간 원산지관리 협업체계 구축

현장검증을 위한 미국 관세청의 서면질의서(CBP Form446)에 대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협력

45) 정재완, “한-미 FTA원산지검증에서의 입증책임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4호, 2013, p. 15.

46) 임성균, “원산지 검증사례,”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c, p. 63.

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원청업체는 평소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와 FTA를 이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의 증대, 수출채산성 향상 등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자료의 보관,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FTA를 통해 수확한 이익을 중소기업체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원산지관리 및 검증과 관련한 인원과 비용의 지원 등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바이어로부터 검증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요청받거나 답변을 요구받을 경우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는 곧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증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한 바, 현재까지 총 9개협정 47개국과 협정을 발효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 실질적 타결을 이룬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까지 감안하면 근 10년만에 전세계 경제영토의 73%를 차지한 FTA 강국이 되었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FTA는 상품무역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체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신규 거래선 확보는 물론 고정 거래선 유지와 양허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를 목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

FTA 관세특혜를 받고 또는 상대수입국에 동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품목 분류에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식과 증명에 따른 상대국 검증 절차, 그리고 서류보관 등으로 이어지는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따른 피해가 회사의 존폐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 FTA원산지 상품거래로 인해 혜택은 누렸지만, 사후에 닥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원산지 검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범 정부차원에서 수많은 홍보와 교육 그리고 FTA컨설턴트, 원산지관리사 양성 등 총괄적인 지원으로 다소나마 부담이 해소된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원산지검증기법이 발달한 국가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실로 어려운 현실이 된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원재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출입통관절차 후 서류보관 등 사후업무단계까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절차와 방법은 상호 협정 및 국내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업체 주관적인 판단으로의 준비는 사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TA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국내외 세관이 실제로 검증한 사례를 입수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원산지검증 및 수입통관제도를 심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도출되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기존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심도있는 실증연구가 아닌 실무적으로 있어진 일부 검증사례를 통하여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데 그쳤다.

한·미 FTA협정에 근거한 수출입업체의 검증사례는 점증하고 있음에도 실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의 검증사례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등의 우려로 제한적 공개로 추진됨에 따라 많은 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일부 공개된 검증사례가 한정되어 있어 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원산지 검증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업별 특성과 상대국과의 수출입통관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관련 사례의 검증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표준화된 또는 업종별 실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검증사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품목별,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데이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증사례를 통한 실제 업체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은 보다 실질적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한 바, 차후에는 기업별 인터뷰 연구, 수출입통계 현황, 협정별 또는 품목별 검증현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학술연구논문]

- 고태진, “중소기업 FTA 지원확대와 관세사 역할 강화,”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
- 김석오, “미국 진출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사례 및 시사점,” KOTRA 기고문, 2013.12.30.
- _____, “미국의 수입통관장벽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14년 여름호, 한국관세사회, 2014.
- _____, “미국의 원산지검증 동향 및 시사점,” 「계간 관세사」, 2013년 가을호, 한국관세사회, 2013.
- 김희열, 곽근재,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2013.
- 명재호, “원산지검증을 통해 절전지훈을 배우다”, 청솔관세법인, 2014.1.
-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4.
- 윤남현, “FTA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세사의 역할,” 「계간 관세사」, 2012년 여름호, 한국관세사회, 2012.
- 임성균, “미국세관의 주요 업종별 한미FTA 검증사례 연구,” 「계간 관세사」, 2014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4.
- _____,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a.
- _____, “한·미 FTA 원산지 검증실무,”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b.
- _____, “원산지 검증사례,” 「계간 관세사」, 2013년 봄호, 한국관세사회, 2013c.
- 임쌍구, “국내 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대비 시태와 제도상의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2013.

정재역, 정재완, “한-미 FTA원산지검증에서의 입증책임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 회지」, 제14권, 제4호, 2013.

최양식,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통상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4.

[서적 및 정책용역보고서]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매뉴얼」, 2010.

_____, 「원산지규정 정리집」, 2012.

_____, 「FTA 설명자료」, 2010-2013.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무역리포트」, vol. 09, 2014.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검증기법」, 2012.

_____, 「원산지결정기준 교육교재」, 2013.

_____, 「원산지결정기준」, 2014.

_____, 「원산지결정기준 및 FTA협정 및 법령」, 2014.

김관우, 백형관, 「FTA원산지 실무완성」, 두남출판사, 2013.

서울본부세관, 「한·미 FTA원산지검증대비 실무가이드라인」, 2013.

윤남현 외, 「FTA 알고가자」, 시스콤, 2013.

이영달, 「2014년도 개정판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최홍석 외, 「FTA시대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1.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검증대응전략」, 2013.

_____,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2014.14.